

모두가 행복해지는 **coop**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CONTENTS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 제1장 자금지원

1. 일자리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8
2. 청년내일채움공제(재) / 고용노동부	11
3.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4.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1
5. 2018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5
6. 2018년도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7
7. 2018년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9
8. 2018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30
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32
10.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3
11.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중소기업진흥공단	41
12.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50
13. 기술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51
14.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기금	53
15. 특화보증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54
16.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0
17. 특례보증신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1
18. 미소금융 창업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64
19. 미소금융 운영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65
20.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66
21.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7
22.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지원사업 / 전자파기술원	68





## 제2장 교육 및 컨설팅지원

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중소기업부	72
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74
3. 소상공인평생교육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6
4.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
5.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9
6. 경영컨설팅 / 신용보증기금	80
7. 신용관리 컨설팅(CRC) / 신용보증기금	82
8. 협동조합 PL 및 손해공제 공동보험 가입 / 파란우산공제	83
9.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4
10.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6
11. 협동조합 임원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7
12.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8
13.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및 현장코칭 운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9

## 제3장 홍보 및 판로지원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2
2.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4
3. 2018년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 서울산업진흥원	96
4.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부	98
5.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유통센터	99
6.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9
7.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0
8. 2018 중소기업명품마루 업체선정 / 코레일관광개발	112
9.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품기술서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4
10.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6
11. 협동조합 상품물 운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7



## 제4장 기타 정책제도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120
2.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122

## 제5장 온라인 쇼핑몰

1. COOP 협동조합 상품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26
2. 함께누리 / 서울산업진흥원	128
3. 경기행복샵 / 경기테크노파크	130
4. 경기사이버장터 / 경기도	132
5. 강원곳간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4
6. 강원마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36
7. 원주물 / 원주시	138
8. 인제물 / 인제군	140
9. 홍천물 / 홍천군	142
10. 하늘다음태백 / 태백시	144
11. 와이팜 / 세종특별자치시	145
12. 농사랑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47
13. 따숨물 / 충청남도	149
14. 당진팜 / 당진시	150
15. 다채물 / 대구광역시	152
16. 사이소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54
17. 포항마켓 / 포항시	156
18. 봉화장터 / 봉화군	157
19. 경남물 / 경상남도	159
20. 거시기장터 / 전라북도	161
21. 순창로컬푸드 / 전라북도	163
22. 남도장터 / 전라남도	164
23. e제주물 / 제주특별자치도	166
24. 아임쇼핑몰 / 공영홈쇼핑	168
25. 아임스타즈 / 중소기업유통센터	169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01 자금지원

# 01 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

## 1. 일자리안정자금

### 사업개요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명까지만 지원)
    -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요건

-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천원까지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금액

-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 자에 지급

### ▶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 1350

홈페이지 [jobfunds.or.kr](http://jobfunds.or.kr)

## 2. 청년내일채움공제(재)

### 사업개요

-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

- ▶ 정규직 취업(채용)
  - 청년공제 가입
    - \* 워크넷 참여신청 → 중진공 청약신청
- ▶ 공제금 적립(2년)
  - 청년 : 300만원(매월)
  - 정부 : 900만원(2년간 5회)
  - 기업 : 400만원(2년간 5회)
- ▶ 만기 지급
  - 청년 : 2년간 근속시 1,600만원(+이자) 지급

### 신청방법

-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문의처 내일채움공제고객센터 ☎ 1800-7900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바로가기 [goo.gl/FJDGP5](http://goo.gl/FJDGP5)

### 3.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 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R&D	472	2년이내	3	70% 이내	'18.1월	'18.1~2 월	'18.3~4 월
	융복합 R&D	151	2년이내	2				
	주력산업비 R&D	619	1년이내	5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 기업R&D	19	3년이내	3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Tel. 042-481-1678, 79)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Tel. 02-6009-3724, 3727, 3728)  
(주력산업기업지원 Tel. 02-6009-3744)  
(풀뿌리기업육성 Tel. 02-6009-3725)

# 01 주력산업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청년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기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콜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공모방식 :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이내, 21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72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jUv2dQ](https://goo.gl/jUv2dQ)

## 02 융복합 R&D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참고 : 융복합R&D 지원예시〉

**사례 1. 나이키플러스 (NIKE+)**  
운동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동시간, 거리, 소모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앱 연계서비스 제공

**사례 2. 제록스 : 제조업+서비스융합**  
복사기 고장시 제조업체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진단 소프트웨어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추가

-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중소,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이내, 21개월
  -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64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jUv2dQ

## 03

#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

### 지원내용

- ▶ **사업 내용**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 **지원 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중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특화품목 세부사항 안내〉

- 지역적 특성(기후, 지형 등)과 여건(기업집적, 소비시장) 등이 타지역과의 차별성 혹은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어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 및 제품
  - 특산자원 :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기반의 생물자원
    - \* 정선황기, 지리산 허브, 금산 백삼 등
  - 전통문화자원 : 지역에서 보존되어 온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작품 등 전통 자원 및 근현대에 발전되어 온 문화자원
    - \* 공주 한산모시, 강원 소각, 김천 농약기 등
  - 천연자원 : 광산자원, 물 등 천연 자원, 자연 생태 관광 자원 등
    - \* 보령 머드, 아산 온천수 등
  - 집적자원 : 특정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기업이 집적되어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 \* 대구 안경테, 익산 주얼리, 영암 수산기자재
- 농수산물품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가공 및 고부가가치화 포함) 분야는 사전제외
  - \* 다만, 동 품목자원을 활용하여 공업용 재료나 원료 등 공산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또한, 기존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특화품목도 사전제외

- ▶ **지원 대상**
  - R&D :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이내, 33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20.12.(33개월)
    -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지방비 매칭 : 총국비의 10%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 사업비 지원비율 :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지원유형

- ▶ R&D :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지원유형	개념
전통기술개선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첨단기술 융·복합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 ▶ 비R&D :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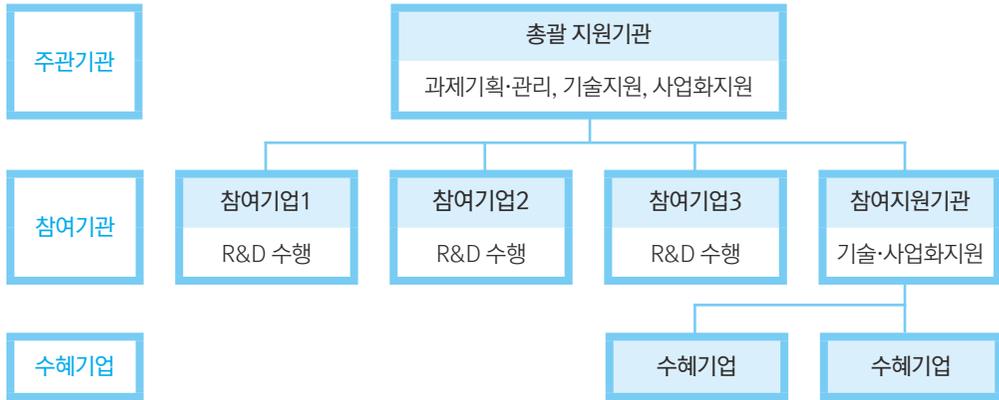
유형	프로그램(예)				
제품 성능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기타
제품 판로 개척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기타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 추진 체계

-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 활용기업 및 지역혁신기관\*간 과제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참여기관 :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 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추진체계도 예시 〉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 **참여기업** :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참여지원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기관(기업)
- ▶ **수혜기업** :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5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jUv2dQ

## 04 주력산업 비R&D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지원분야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은 산업별 품목개요서 내용을 3개까지 통합하여 1개 과제로 제출 가능
-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35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jUv2dQ](http://goo.gl/jUv2dQ)

## 4.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01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개요

- ▶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과제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부)” 선정기업의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 '18년 지원규모 : 신규 60억원 중 1차 28억원
  -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자유공모)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 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6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전문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한도

####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 기술개발 총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8년 1월 22일(월) ~ 2월 12일(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AJ2x](http://goo.gl/zAJ2x)

## 02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은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1차 134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업종별 평균 R&D 투자비율은 (붙임3) 참조

※ '16년도 또는 '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R&D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8년 2월 8일(목) ~ 2월 28일(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rEXx4k](http://goo.gl/rEXx4k)

## 5. 2018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구현수단)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구분	개발내용
제품서비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이 생산하는 생산제품과 신규서비스의 융합을 통해</li> <li>•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li> <li>•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li> </ul>
신규서비스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통해</li> <li>•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li> <li>•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li> </ul>
업종공동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며</li> <li>• 서비스매출이 가능한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 개발</li> </ul>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필수 : 기획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가능한 경우
    - \* 기획기관이란 서비스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대학 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하며 기획기관의 기획지원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4. 지원내용 및 한도> 참조
    - \*\* 컨소시엄 구성 목적은 신청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규비즈니스모델(구현수단)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화성공률을 높이기 위함
    - \*\*\* 신청기업이 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야를 바탕으로 기획기관을 선택한 후 기획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기간, 투입인력, 예산규모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지원분야	신청자격
제품서비스화	• 서비스 융합 대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신규서비스창출	• 서비스 업종 영위기업
업종공통서비스	• 아래 경우에 하나 이상 해당 - 본점 및 지점 형태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복수의 사업장(동일 업종)을 보유한 경우 - 동일한 서비스 업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이때, 협·단체는 기획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과제별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2.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구분	지원기간	지원한도(A)	기획지원비용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B)	출연비율	
				정부	민간 부담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2.2억원	65% 이내	35% 이상 (현금비율 60% 이상)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1.7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2.2억원		

\* 기획지원비용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B)는 각 과제별 지원한도에 기획지원비용을 합한 금액 (B=A+기획진단비용(최대 0.2억원))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18년 3월 19일(월) ~ 4월 9일(월) 18:00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4AjPe](http://goo.gl/z4AjPe)

## 6. 2018년도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떡류, 해썬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
  -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66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썬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 지원
  - 해썬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떡류 150개소, 그 외 의무적용품목 216개소)
    -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 2017.12.31. 이전 해썬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썬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썬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썬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썬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썬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 **지원대상 업체** : '18년도 해썬 인증 의무적용 품목 식품제조 소규모업체
  - ※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해썬 인증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문의

###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구분	연락처
서울청	02-2640-1378~1380
부산청	051-602-6172, 6152, 6161
경인청	02-2110-2039, 8047, 8035
대구청	053-589-2739~40
광주청	062-602-1406-8
대전청	042-480-8717, 8727~8

## 7. 2018년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협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 사업내용
  - 해협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식육가공업 60개소)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협 인증(적용) 후 보조금 사후 교부
-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협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협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거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협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해협 인증(적용)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

-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서울청 02-2640-5011	• 경인청 02-2110-8056	• 광주청 062-602-1473
• 부산청 051-602-6135	• 대구청 053-589-2732	• 대전청 042-480-8735

홈페이지 [www.mfds.go.kr](http://www.mfds.go.kr) | 바로가기 [goo.gl/7w139q](http://goo.gl/7w139q)

## 8. 2018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구체적 제품 및 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시장진출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반형 + 심화형)
지원규모	총 15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총 4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 ▶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내용은 ①~③ 항목 중 사업화 필요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신청 유형별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내에서 규모 및 개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단, 컨설팅(항목①)의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5백만 원임.

#### 〈사업화 지원 항목 및 세부 내용 예시〉

- ① 전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5백만 원 이내)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② 기술·제품 개발/개선, 고도화 지원
  - 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성능 개량, 시험·분석,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플랫폼 개발·구축 등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기계장비 설치·구축 등
  - 기술정보 조사·분석, 국내외 시장 조사·분석 등
- ③ 생산 및 판매 경쟁력 지원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 영업용 샘플제작 등
  - 본 과제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 참가(참가비, 부스비 등), 제품·서비스 카달로그 제작 등

- ▶ 지원기간 : 2018년 5월(협약체결시) ~ 11월까지 (7개월 이내)

**신청 및 접수**

- ▶ 신청 · 접수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4월 10일(화)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제출처 : setcoop@wiset.or.kr)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 02-6411-1062

홈페이지

www.setcoop.net | 바로가기 goo.gl/s9VG8e

## 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중심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원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과학 기술기반의 지역 공동체 발전기반 마련
  -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응용으로 협의회, 구성원, 지역의 동반 성장 기대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협의회 별 중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요 활동비 지원(활동비1) 및 추진비2))
    - \* 중점 비즈니스 : 협의회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는 사업분야  
(예) 드론, 3D프린팅, 과학교육, 스마트팜 등
    - 1)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세미나 개최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 2) 국내여비, 회의비(식대 등)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0월 30일 (약 7개월)
- ▶ 지원내용 :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중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활동
- ▶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최소 3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 협의회 구성의 50%이상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어야 함.
  - ※ 타분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경제조직, 민간기업 등의 참여 권고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준, [참고1]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참조

### 주요일정

- ▶ 2. 28(수) ~ 3. 19(월) : 신청접수
- ▶ 3월 4주 : 요건 및 선정평가(서면평가)
- ▶ 3월 5주 : 선정 공고 및 협약 진행
- ▶ 4월 ~ 10월 : 사업진행
- ▶ 11월 초 : 성과 공유회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8일(수) ~ 3월 19일(월),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 접수처 : setcoop@wiset.or.kr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 02-6411-1062

홈페이지 www.setcoop.net | 바로가기 goo.gl/vi2UTT

## 10. 2018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공통사항

####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가점(5%) 반영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 소상공인 전용 :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 소공인 전용 :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 공용 :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사업개요

#### ▶ 융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신청 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및 신청여부 확인\* 후 정책자금 접수 진행
  - \*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확인

#### ※ 융자 제한 소상공인

-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 포함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용자한도 및 금리

-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 (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용자 방식

- 소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 \*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신청 및 접수

▶ 용자 신청·접수 : 소진공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사업별 용자신청서 제출〉

- ①일반경영안정자금 ②청년고용특별자금 ③소상공인긴급자금 ④성장촉진자금 ⑤매출연동 상환자금 ⑥소공인특화자금

▶ 접수시기

-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 단, '18년 상반기는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배정 한도 내에서 상시 접수·지원(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 제외)
  - \* 소상공인 매출연동 상환자금은 2월부터 접수 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배정한도 관계없이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

# 01 일반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
  -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소매업(45~47), 기타 서비스업(76, 90~91, 95~96)은 신청가능.
    -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및 소상공인 용자제의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재해자금 및 경영애로 자금 등 일부 자금은 제외
  - 일반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창업초기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해자금 : 지자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
  - 경영애로자금 :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자금은 2.0% 고정금리 / 사업전환자금은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 사업전환자금은 기업당 1억원
  - 용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

## 02 청년고용특별자금

### 사업목적

-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2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용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http://goo.gl/6ir2oe)

## 03 소상공인긴급자금

### 사업목적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
- ▶ 용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용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https://goo.gl/6ir2oe)

## 04 성장촉진자금

### 사업목적

-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 단,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 ▶ 용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시설 및 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용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 편성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http://goo.gl/6ir2oe)

## 05 소상공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 사업목적

- ▶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저신용(4~7등급) 또는 간이과세자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 단, 소공인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0.3%p 가산
  -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포함)  
\* 경영사정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 1년 가능
  - 대출한도 : 연 카드매출 200% 범위 내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결정
  - 상환방식 : 카드매출액 중 일정 비율(10~20%)을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상환
  - 용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http://goo.gl/6ir2oe)

## 06 소공인특화자금

### 사업목적

-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사업장(공장) 확보자금(건축, 매매, 경·공매)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기계·설비 구입자금 대출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로 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 부분 또는 전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용자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 또는 전부 조기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자금 한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자리 창출 소공인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은 사업성 평가 점수에 5%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기준 : 직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6ir2oe

## 11.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사업목적

-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공통사항

-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

- 신청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 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 사후관리 :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미래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신청 및 접수

-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

# 01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창업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li> <li>*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li> </ul>
청년전용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li> <li>*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li> </ul>

### ▶ 지원내용

####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용자조건

구분	내용
창업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li> <li>•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li> </ul>
청년전용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2.0% 고정금리</li> <li>• 대출기간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 3년)</li> </ul> <p>*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p>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http://goo.gl/z3hRzj)

## 0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사업목적

-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인건비 등) 등을 지원하는 자금 별도 운용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 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위 신청 요건 미적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연 3.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http://goo.gl/z3hRzj)

## 0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사업목적

-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구분	내용
개발기술 사업화	<p>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li> <li>•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li> <li>•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li> </ul> </li> <li>•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li> <li>•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li> <li>•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li> <li>•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li> <li>• 특허청의 IP-R&amp;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li> </ul>
글로벌 진출지원	<p>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p>

#### ▶ 지원내용

- 용자범위

개발기술 사업화	<p>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p>
글로벌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 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li> <li>• 수출사업화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li> </ul>

•용자조건

구분	내용
개발기술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li> <li>•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li> </ul>
글로벌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li> <li>•대출기간 : 1년 이내</li> </ul>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http://goo.gl/z3hRzj)

## 0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 및 관련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기업 등

#### ▶ 지원내용

#####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산업경쟁력 강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http://goo.gl/z3hRzj)

## 05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 용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인건비 등) 등을 지원하는 자금 별도 운용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경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 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 경영애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위 신청 요건 미적용

#####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연 3.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z3hRzj](http://goo.gl/z3hRzj)

## 12.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운영

### 사업개요

- ▶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조달 참여 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대기업도 이용가능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 보증 취급범위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을 보증
  - 취급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의 4종
  - 이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요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 504개
    - 조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 44,227개

### 신청 및 접수

- ▶ 상담 후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 1899-0098, [www.gbiz.or.kr](http://www.gbiz.or.kr)
- ▶ 신청서류 : 신청서, e-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출신고필증 1부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 ☎ 1899-0098

홈페이지 [www.kbiz.or.kr](http://www.kbiz.or.kr)

## 13. 기술보증지원

### 사업개요

-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원내용

- ▶ 한도
  - 일반한도 : 기업당 30억원
  - 특별한도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50억원, 우수기술기업 70억원,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창업, 기술개발, 시장개척 또는 영업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사업장(토지와 건물) 구입, 분양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건물(공장 포함)의 구입, 분양,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기계 등 설비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 영업점 방문, 전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상담 ↓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접수 조사자료 수집 ↓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심사·승인 ↓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기술평가 조사 ↓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보증서 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 02-799-6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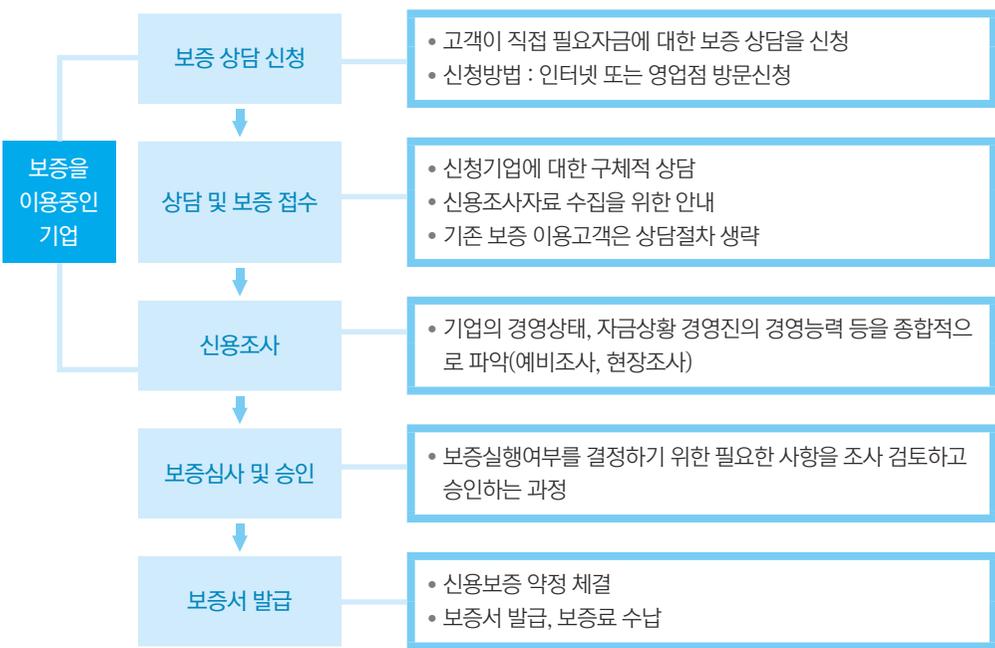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바로가기 [goo.gl/70VpJB](http://goo.gl/70VpJB)

# 14. 신용보증지원

## 사업개요

- ▶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증절차



## 보증대상 기업

-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340

**홈페이지** www.kodit.co.kr | 바로가기 goo.gl/T9gglx

## 15. 특화보증프로그램

### 01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단,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 보유 기업은 제외

#### 대상자금

-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50백만원 아하는 매출액 검토 제외)
  - 시설자금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범위내

※기보, 재단 거래업체 지원 가능

#### 보증료

- ▶ 0.5%

#### 보증비율

- ▶ 100% 전액 보증서

#### 보증기간

- ▶ 5년이상 장기 운용 원칙(협의 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이내 운용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정책보증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512
서울동부정책보증팀	서울동부, 강원	02-2204-6241
수원정책보증팀	경기	031-230-1511
인천정책보증팀	인천	032-450-1641
부산정책보증팀	부산, 경남, 울산	051-605-1371
대구정책보증팀	대구, 경북	053-430-8811
광주정책보증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131
대전정책보증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61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 02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 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주)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 ※ (주)시행령에서 정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금

-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1억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에서 기보 및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보증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사정 생략 가능)

### 보증료

- ▶ 연 0.5%

### 보증비율

-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정책보증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512
서울동부정책보증팀	서울동부, 강원	02-2204-6241
수원정책보증팀	경기	031-230-1511
인천정책보증팀	인천	032-450-1641
부산정책보증팀	부산, 경남, 울산	051-605-1371
대구정책보증팀	대구, 경북	053-430-8811
광주정책보증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131
대전정책보증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61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 03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 대상기업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
    - 소매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요건(주)을 충족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 (주) 소매업 : 협동조합의 매입(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100백만원

### 운전자금 한도사정

- ▶ 아래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 ① 최근 1년간 매출액 × 1/2
  - 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 보증료

- ▶ 연 0.5%

### 대상자금

-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취급부점

- ▶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정책보증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512
서울동부정책보증팀	서울동부, 강원	02-2204-6241
수원정책보증팀	경기	031-230-1511
인천정책보증팀	인천	032-450-1641
부산정책보증팀	부산, 경남, 울산	051-605-1371
대구정책보증팀	대구, 경북	053-430-8811
광주정책보증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131
대전정책보증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61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 16. 소기업 ·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사업개요

-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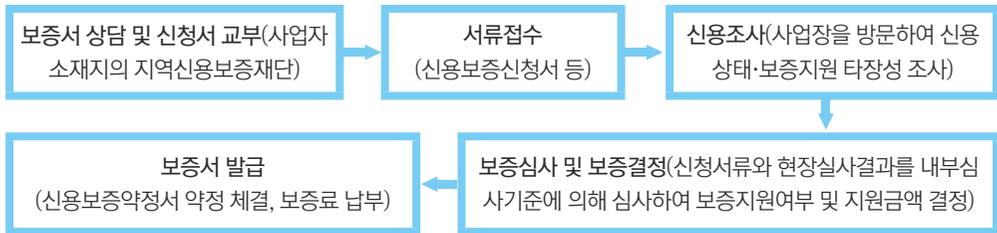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및 영리협동조합 포함)
  - 우선지원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무역어음 인수 담보보증, 수출지원 자금 대출 보증, 시설대여보증, 이행보증 등
    - ※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 보증심사방법 :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자금능력 등
-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0.5% ~ 2%(재단 및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국번없이 1588-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http://www.koreg.or.kr)

## 17. 특례보증신용

### 01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시행목적

-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 대출취급은행 :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 단, 재보증 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은 제외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 보증료율 : 연 0.5%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시행기간 : 2018.02.22 ~ 2018.12.31(또는 한도 소진시 까지)

문의처 대표전화 ☎ 1588 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http://www.koreg.or.kr) > 신용보증 > 사업자보증 > 특례보증

## 02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시행목적

- ▶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사업개요

- ▶ 대출취급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등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 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다.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 보증비율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 ▶ 보증기간
  - 운전자금 : 7년 이내
  - 시설자금 : 대출기한 이내
- ▶ 시행기간 : 2008. 7. 1 ~ 별도 통보시

문의처   대표전화 ☎ 1588 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

## 03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 시행목적

-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 대출취급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은행
- ▶ 대상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 보증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대 7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포함 최대 3억원이내)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포함 최대 2억원이내)
-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시행기간 : 2018. 2. 9 ~ 2018. 12. 31.(또는 한도 소진 시 까지)

**문의처** 대표전화 ☎ 1588-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http://www.koreg.or.kr)

## 18. 미소금융 창업자금

### 사업개요

- ▶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 지원대상

-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7천만원

**TIP**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http://www.kinfa.or.kr) | 바로가기 [goo.gl/rrd2kk](http://goo.gl/rrd2kk)

## 19. 미소금융 운영자금

### 사업개요

-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http://www.kinfa.or.kr) | 바로가기 [goo.gl/rrd2kk](http://goo.gl/rrd2kk)

## 20.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 사업개요

-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2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기간 5년 이내)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http://www.kinfa.or.kr) | 바로가기 [goo.gl/rrd2kk](http://goo.gl/rrd2kk)

## 21. 산재예방시설자금용자

### 지원대상

-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 ▶ 대출금리 : 연리 1.5%
-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수협, 한국시티은행
  -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용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용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18.01.02.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표전화 : 전국 1544-3088

**문의처** 산업안전부(안전보건부) 해당지역 담당자 ☎ 1544-3088

**홈페이지**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 바로가기 [goo.gl/nWjf5P](http://goo.gl/nWjf5P)

## 22.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지원내용

기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 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	2회	3회
적합인증(등록)일	'17.2.1 ~ '18.1.31	'17.5.1 ~ 18.4.30	'17.8.1 ~ '18.7.31

-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포함)

### 추진일정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18.2.1 ~ 3.12	'18.5.1 ~ 6.9	'18.8.1 ~ 9.9
평가·선정	'18.3.13 ~ 4.11	'18.6.10 ~ 7.9	'18.9.10 ~ 10.12
지원금 지급	'18.4.12 ~ 4.30	'18.7.10 ~ 7.31	'18.10.13 ~ 11.2

- ※ 지원회차는 지원수요 및 예산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및 접수

###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 → [지원신청] 메뉴에서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등록  
 ※ 등록된 신청서는 회차별 신청·접수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제출처 : 우)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문의처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02-703-2453 ✉ jangys@rapa.or.kr

홈페이지

www.rapa.or.kr | 바로가기 goo.gl/DkLnNx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2

교육 및 컨설팅지원

# 02 교육 및 컨설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전화(☎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방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터넷(www.bizinfo.go.kr/link)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

### ▶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0개 분야(아래 참조)

분야	지원내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마케팅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바이어발굴, 수출계약 체결, 해외고객 클레임 관리 등
기술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적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지원대상

- 상담 : 중소기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탱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96111~96999)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전 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신청접수의 전화번호 참조)
-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 방 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신청접수의 주소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 (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12개 지방청 및 5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 02-6205-8122

**홈페이지** 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F78cBL

## 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 지원조건(공통)

과제명	지원조건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사업기간
경영·기술 컨설팅	업력 7년 이상 (최대 3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30 ~ 50%	최대 6개월/년 (2개월/년 추가연장 가능, 1회)
	업력 7년 미만 (최대 20백만원)	65%	
특화형 컨설팅	최대 10백만원	정부 90%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5백만원	정부65%	

- ▶ 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과제명	지원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경영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CSR(사회공헌) 등)
기술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기술 전 분야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특화형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미래성장산업, 신서비스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업 서비스화 분야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기업 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제조업에 한함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중진공 정책자금 선정기업)

## 신청 및 접수

### ▶ 지원절차

- 경영·기술, 특화형 컨설팅 사업
  - ① 사업신청\* → ② 기업선정평가 → ③ 기업 선정 → ④ 수행역량 강화 워크숍 → ⑤ 수행계획평가 → ⑥ 지원과제 선정 → ⑦ 협약체결 → ⑧ 컨설팅 착수 → ⑨ 중간점검 → ⑩ 완료보고 → ⑪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
  - ① 사업신청\* → ② 선정평가 → ③ 지원기업 선정 → ④ 협약체결 → ⑤ 컨설팅 착수 → ⑥ 중간점검 → ⑦ 완료보고 → ⑧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 경영·기술, 특화형 컨설팅 : 분기별 신청
- 원스톱 창업지원 컨설팅 :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성장처 ☎ 042-481-8969

홈페이지    [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 | 바로가기 [goo.gl/NdVh8n](http://goo.gl/NdVh8n)

### 3. 소상공인평생교육원

#### 0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 신사업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에 대한 이론교육, 체험교육 등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교육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 이론교육 : 창업교육, 경영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 ▶ 체험교육 :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경영체험과정 제공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 이론교육, 경영교육, 체험교육 등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교육 체계 구축
- ▶ 점포체험이 곤란한 비점포형 업종에 대해서도 체험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신청·접수

- ▶ 창업교육 : 7기(2018.1월 ~ 2018.2월), 8기(2018. 5월 ~ 6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전용교육장

##### 처리절차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7기	2018.1월~2018.2월	2018.2월	2018.2월~3월	2018.4월~7월
8기	2018.5월~6월	2018.6월	2018.6월~7월	2018.8월~11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14, 7841, 7842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홈페이지** www.semas.or.kr | 바로가기 goo.gl/62H3k2

## 02 소상공인 경영교육

### 사업개요

- ▶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경영개선교육 및 방송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 경영개선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을 교육(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무료 교육)
- ▶ 소상공인방송교육 : 소상공인방송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방송
  - \* 경영교육 예산 중 일부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협동조합, 컨설팅, 시장지원) 콘텐츠 제작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 '소상공인방송'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문 방송교육 신설

### 신청·접수

- ▶ 2018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 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 후 교육비 지원 신청

### 처리절차

구분	사업 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수강	교육비 신청
전문기술교육	2018.1월	2018.2월~	2018.2월~	2018.2월~
경영개선 및 방송교육	2018.1월	수시	수시	무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홈페이지

www.semas.or.kr | 바로가기 goo.gl/62H3k2

## 4.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 사업개요

-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어려운 경영여건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연계지원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 소상공인컨설팅 : 소상공인의 마케팅,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 경영역량 강화와 명장 등의 노하우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 지원

### 신청 및 접수

- ▶ 연중 (2월 ~ 예산 소진 시)
  - 소상공인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 2018년 2월
    -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con.sbiz.or.kr) → 로그인 → 나의 컨설팅 메뉴 클릭 →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31~7833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홈페이지 [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바로가기 [goo.gl/62H3k2](https://goo.gl/62H3k2)

## 5.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사업개요

- ▶ 소상공인 간 자발적 협업 유도 및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 ▶ **협업지원** : 조합역량별로 일반형/선도형 조합별 차등지원,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지원
  - 지원한도 : 조합당 1~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조건 : 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원칙)
- ▶ **연계지원**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판로, 조합간 네트워크 등 지원
  - 협동조합 기본교육, 조합설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우수조합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
  - 현장(부스설치 등), 온라인(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판매 및 마케팅 지원

### 18년 주요 변경 내용

-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신설, 조합당 1억원내 총액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조합규모·역량(조합원수, 출자금 등)에 따라 차등지원(1~5억원) 및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체인화

### 신청·접수

- ▶ 2018년 1월~6월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2018.1월	2018.1월~	2018.2월~	2018.2월~	2018.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11~2, 7720~4

**홈페이지** www.semas.or.kr | 바로가기 goo.gl/62H3k2

## 6. 경영컨설팅

### 사업개요

- ▶ 신용보증기금의 내부전문가와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그룹」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및 진단·평가하는 동시에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
  - 컨설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노력에 상응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컨설팅의 특징 :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최고의 경영컨설턴트들로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4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진행과정 : 신청서 접수 → 현장방문 상담 → 컨설팅 일정협의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수수료 : 사전상담 후 결정(신보 내부 기준에 의거 60%~100% 지원)

### 지원대상

- ▶ 경영전략
  -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및 검토
  - 부분면 목표달성 실행계획 수립 및 검토
  - 기업 경영현황진단 및 경영관리체계 확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 경영진의 경영마인드 제고등
- ▶ 인사조직
  - 조직 및 인력관리체계 확립
  - 조직 재설계 및 신인사제도 제정
  - 직무분석 및 성과급 임금체계 확립
  - 급여체계 확립 및 연봉제 수립
  - 인사규정 제정 등
- ▶ 마케팅
  - 시장분석 및 목표시장 공략기법 제고
  - 상품기획 및 브랜드 구축
  - 고객 및 영업관리체계 확립
  - 영업능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마인드 제고
  - 신상품 시장성 검토 및 판매방안 수립 등

▶ 재무관리

- 재무내부통제 및 재무관리 업무 정형화·통합
- 효율적이고 적당한 재무회계 정보산출
- 원가관리시스템·관리회계시스템 확립
- 자금관리시스템 분석 및 개선 등

▶ 생산관리

- 설계·제조원가 혁신 및 표준·목표원가 관리
- 생산손실개선 및 낭비제거·공정관리 체계 개선
- 최적 생산통합시스템 구축 및 납기관리 혁신
- 품질관리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개선
- 설비배치개선 및 설비생산성향상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 ERP 등 기 이용중인 정보화 시스템 활성화 등  
단, 정보화 프로그램 신규설치 및 구입제외

▶ 가족기업 경영컨설팅

- 가족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한 장수 DNA 육성
- 현재 가족기업의 수준 진단
- 가족기업의 승계전략, 지배구조 등 경영시스템 구축

신청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505-071-5120 또는 이메일 khm891@kodit.co.kr 송부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4

홈페이지

www.kodit.co.kr | 바로가기 goo.gl/vfd5SJ

## 7. 신용관리 컨설팅(CRC)

### 사업개요

- ▶ 중소기업에 신용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리고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신용위험관리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신용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컨설팅

### 사업개요

- ▶ 분석범주별 주요내용
  - IR(Industry Rating)&개별평가지표 매트릭스 분석
    - 신청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위험 결정요인에 따른 산업 상황과 개별평가지표에 근거한 신청기업의 산업 내 상대적 위치를 크로스 분석
  - 거래의존도 및 매출처 신용도
    - 주 매출처별 신용도와 거래의존도 및 매출채권회전기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거래처 파악 및 거래처별 관리전략 수립
  - 타겟 매출처에 대한 경쟁관계 분석
    - 타겟 매출처와 기 거래 중인 기업의 거래현황 분석을 통해 신청 기업의 경쟁 관계를 조망하고 타겟 거래처 영업전략 수립
  - 동종업계 Peer 그룹 경쟁력 분석
    - 업종, 지역, 재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청기업과 유사한 Peer기업군을 선정하고 영업활동, 수익력, 생산성, 재무구조 등 핵심지표를 상호 분석하여 경쟁력을 분석
  - 신용도 변화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플래닝에 기초한 영업, 투자, 재무, 경영활동별 신용도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컨설팅 전·후 시뮬레이션 분석
- ▶ 대상 : 업력 3년 이상인 보증기업
- ▶ 컨설팅 진행과정 : 신청서 접수 → 현장방문 상담 → 컨설팅 일정협의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
- ▶ 컨설팅 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505-071-4652 또는 이메일 mhch3111@kodit.co.kr 송부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4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바로가기 [goo.gl/J4qXnX](http://goo.gl/J4qXnX)

## 8. 협동조합 PL 및 손해공제 공동보험 가입

### 사업개요

- ▶ PL 공동(단체)보험이란?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조합(단체)가 보상한도를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PL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후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일종의 공동구매 형태)
- ▶ PL 공동(단체)보험 장단점
  - 개별적으로 PL보험에 가입할 때와 비교해서 약 40~50%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 농기계, 완구, 어육연, 전기, 소방기구, 고소작업대, 승강기, 정수기 등 가입 혜택
    - 보험료 40% 이상 할인 : PL단체보험 할인 20% + 공동가입 추가할인 20~30% (참여업체 또는 매출액에 따라 할인을 증가)
  - 개별 가입시와 동일하게 가입업체별로 개별보험증권 발급
- ▶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기준 및 금액
  - PL : 납입보험료 약 2~5% 사업지원금 지급
    - \* 조합원사 연간가입률과 납입보험료 중 지급률이 높은 것을 적용
  - 손해공제 : 납입보험료 약 7~11% 사업지원금 지급

### 기대효과

- ▶ 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원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조합의 기능활성화 도모 및 수입 확대가 가능

문의처 파란우산공제 공제사업부 ☎ 02-2124-4353

홈페이지 [www.plkorea.com](http://www.plkorea.com) | 바로가기 [goo.gl/9FbpdK](http://goo.gl/9FbpdK)

## 9.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신청·접수
  - 기간 : 공고일 ~ 3. 9(금)까지
    - ※ 이번 차수 신청은 자율형(지속성장,공동)에 한하며, 표준형 컨설팅은 별도공고 예정
  - 방법 :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 지원대상 및 내용

####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자율형	지속성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심화과제
	공동	2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5개 기업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추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지출형	지속성장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 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개월
	공동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031-697-7832, 7837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바로가기 [goo.gl/KfYVzG](http://goo.gl/KfYVzG)

## 10.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사업개요

-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경영 및 사업 역량강화 등 협동조합 운영내실화에 기여

### 지원대상

-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소속 인원

### 지원내용

- ▶ 민간 교육기관,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협동조합 일반경영교육 및 개별사업에 기반한 업종·특화 교육지원

### 교육과정 안내

- ▶ 협동조합 홈페이지→교육→현장교육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1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 [www.coop.go.kr](http://www.coop.go.kr)

## 11. 협동조합 임원교육

### 사업개요

- ▶ 협동조합 임원 대상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으로 운영내실화 및 사업안정화 기여

### 교육대상

- ▶ 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

### 지원내용

- ▶ 마케팅, 판로, 정부부처 지원제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동조합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 신청방법

-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추후 공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 [www.coop.go.kr](http://www.coop.go.kr)

## 12.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 사업개요

- ▶ 협동조합과 설립운영자들의 다양한 상담 및 지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특화된 전문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지원대상

- ▶ 중간지원기관 임직원, 협동조합 활동가 등

### 지원내용

- ▶ 협동조합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교육 실시

### 신청방법

-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추후 공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 [www.coop.go.kr](http://www.coop.go.kr)

## 13.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및 현장코칭 운영

### 사업개요

- ▶ 고품질 전문상담과 방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경영현안 해결 및 사업역량 강화

### 지원규모

- ▶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3개 분야

### 지원대상

- ▶ 협동조합 조합원, 임직원 등 실무자 및 설립희망자

### 지원내용

- ▶ 전문상시상담기관 : 협동조합 운영 상 발생하는 법무/회계·세무/인사·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상담·자문(온라인·유선 상담)
- ▶ 현장코칭 : 온라인신청등을 통해 코칭대상을 발굴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이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 이용방법

- ▶ 협동조합 홈페이지→알림마당→상시상담 문의 작성

문의처

1차상담 ☎ 1800-2012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 → 상시상담)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3

홍보 및 판로지원

# 03 홍보 및 판로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 사업개요

- ▶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지침 및 매뉴얼배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관련정보 제공(주요사업, 품목 등)
-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계획을 집계하여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우선구매제도 활용도 확산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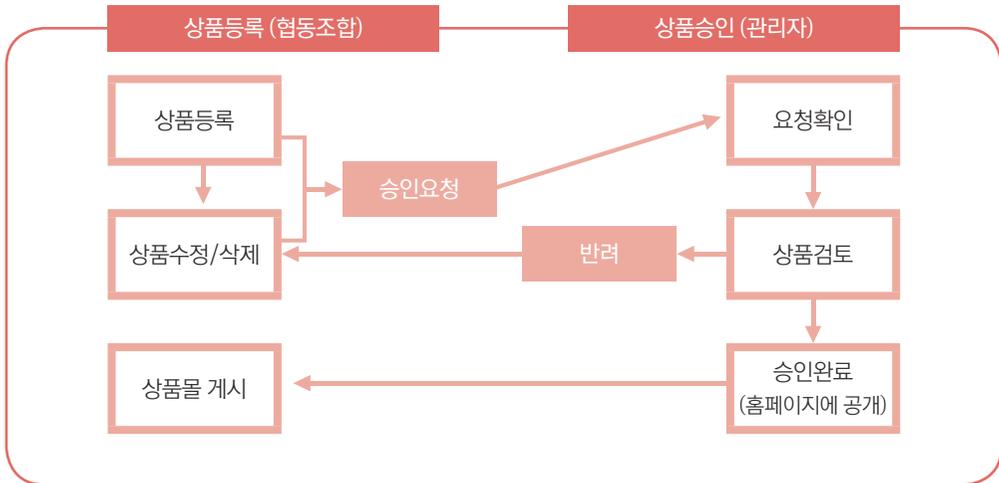
- ▶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범위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 우선구매 절차



### 상품물 등록

- ▶ 협동조합 상품물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등록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품 등록
  - \* 자세한 절차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상품물 내 상품 등록 매뉴얼 참조

▶ 협동조합 상품물 등록 절차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9

홈페이지

www.coop.go.kr

## 2.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발굴·개선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기간 : 선정일 ~ '18.10. (예정)
- ▶ 지원규모 : 53개 상품 내외 (1개 기업 당 1개 상품)

### 신청자격

-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신청서식 참조)를 제출

### 우대사항

- ▶ 직접 생산한 상품(제품·서비스)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우
  - ※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 ▶ 판매실적 및 특허·인증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3년 이내의 입점·판매실적 및 상장·특허·인증서 등 각종 증명자료 제출
- ※ 제외대상
- ▶ 공통사항
  - 직접 기획 또는 생산하지 않고 타사의 제품을 단순 유통만 하는 상품
  - 본 사업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제외하지 아니함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경영컨설팅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5회)를 초과한 기업
  - 경영컨설팅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참여제한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 **컨설팅 지원 : 개선점 도출 및 개선 코칭**
  - 자부담 10% 책정
  - 상품별 고객분석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개선 전략 수립
  - 상품 분석에 따른 상품 패키지 및 홍보 디자인 중심의 디자인 개선점 도출
  - 도출된 과제 중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개선과제 확정
- ▶ **코칭·개선 : 상품 패키지 및 홍보 디자인 개선**
  - 자부담 20% 책정
  - 확정된 개선과제 실행
  - 개선분야

개선구분	세부내용
포장 디자인 개선	상품 라벨, 포장, 세트구성 등의 디자인 개선
홍보자료 디자인 개선	상품소개 카탈로그, 상품소개 웹페이지,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홍보 자료 등의 디자인 개선

- ▶ **(연계·홍보) 스토어 36.5 매장·외부 유통채널 연계 및 상품 홍보**
  - 스토어 36.5(사회적기업제품 판매장) 전국 66개소 매장 입점 연계 및 판촉\* 지원
    - \* 소비자 체험단 및 시식회 등 상품 프로모션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선정 우대
    -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유통채널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8-009호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상품 관련 대형유통채널 기획전 등 내·외부 유통채널 상품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홍보 기회 및 소비자 접점 제공
  - 「MD상담회\*」참여 신청 시 선정 우대
    - \* 다양한 유통채널(백화점, 마트, 홈쇼핑, 온라인마켓 등) 현지 MD와의 입점 상담회
    - \* 3월 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
  - '18년 11월 구축예정인 SEPP(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에 상품정보 게재 연계로 상품홍보 기회 제공

## 신청 및 접수

- ▶ **공모기간 : 공고일 ~ '18.03.14.(수) 18:00까지**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tore@ikosea.or.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031-697-783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 3. 2018년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 모집개요

- ▶ 모집기간 : 1월 4일(목) ~ 4월 4일(수)
- ▶ 모집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제조상품 중 브랜드 인증을 통해 판로개척 및 확대를 희망하는 상품 (기업별 신청상품 수 제한 없음)
  - 필수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제조·생산한 B2C상품(지역 제한 없음)
    - SBA 유통카테고리(별첨 참고)에 해당하는 상품
  - 제외요건
    - 신청서 제출 당시 이미 폐업신고 되었거나 3개월 이내 폐업이 예정된 기업이 제조한 상품
    -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품
    -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인증을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거나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그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
    -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 기타 브랜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SBA 유통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 ※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 진행절차

상품모집	1차 심사(분과위원회)	2차 심사(심의위원회)	상품선정(결과발표)
4월 4일(수)까지	4월 5일 ~ 4월 30일		5월중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① SBA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www.sba.seoul.kr/kr/index>)
- ② 2018년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상품 모집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③ 상품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④ 샘플 제출 \*이메일로 제출방법 안내예정
- ⑤ '신청현황조회'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⑥ 샘플 제출 정보

연번	상세내용	비고
샘플 제출 정보	추후 별도 공지 예정	필수
	* 샘플 제출 안내가 나가기 전까지는 샘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샘플 제출 주소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 신청하는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신청서는 상품별로 제출  
(예) 2개 상품 신청 → 신청서는 상품별로 작성하여 총 2개의 신청서 등록
- ※ 샘플 및 필수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은 기업별, 상품별 상이할 수 있음
-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상품 인증서 및 엠블럼, 인증마크 등 제공
- ▶ 국·영·중문 총 3종 홍보 콘텐츠(e-카달로그, 웹툰, 홍보영상) 제작 지원 기회 제공
- ▶ 어워드전용 온라인채널 '나만 알고싶은 꿀템'(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웨이보, 인스타그램)홍보
- ▶ 종합 홍보지원(언론보도, SNS 바이럴, 방송사 프로그램 연계, 홈쇼핑 등)
- ▶ SBA 서울유통센터, SETEC 내 상품전시 등
- ▶ 선정 상품 소개 자료 번역(영문/중문) 및 바이어에 제공
-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장터 참가 기회 제공
- ▶ SBA 유통교류회 및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 ▶ SBA 서울유통센터 시설 대관 지원

### 주의사항

-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선정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위원 대상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브랜드 어워드에 선정되었더라도 향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 ② 브랜드 상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야기한 경우
  - ③ 기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경우 등
- ▶ 신청서에 등록하신 대외성과(외부수상, 인증, 투자유치)내역은 가점대상이 아닐경우 추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SBA 유통센터운영팀 ☎ 02-2222-3885, 4228, 3771

**홈페이지** [smc.sba.kr](http://smc.sba.kr)

## 4. 직접생산확인제도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 신청절차

#### ▶ 신청기간 : 수시

####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홈페이지** www.mss.go.kr

## 5.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마케팅 준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홍보, 사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

### 추진일정

- ▶ 2018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구 분	사업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정부 보조율 (판매수수료)
마케팅역량	① 마케팅역량 강화	1월~3월	2월~4월	70%
유통망진출	② 온라인 시장 진출	2월~8월	3월~9월	(15% 내외)
	③ 정책매장 입점 지원	1월~11월	격월	(18~25%)
	④ 오프라인 기획전	연중	분기	(21% 내외)
	⑤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3월~5월	5월	90%
사후관리	⑥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연중	분기 2회	70%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강화', '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대상제품군이 신청 가능

#### ※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18년도 주요 특이사항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성과공유 등)의 마케팅사업 평가 우대

- \* 행복한백화점(목동) 및 정책매장(11개) 입점평가 시 가점(3점) 부여
- ▶ '혁신성장' 견인기업(우수 창업기업, R&D 우수제품) 우선 선정
  - 창업사업 관련기관(Tips, 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추천기업, R&D 성공 추천기업(기정원 등) 자동 선정\*(Fast-Track)
    - \* 정책매장, 공동A/S,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아임스타즈 입점 등
  - 마케팅 '첫걸음 기업'에 대한 정책매장 입점 쿼터를 배정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선정기업 평가 우대
    - \* 정책매장, 공동A/S, 온라인 시장진출, 아임스타즈 입점 등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 민간 대형유통망과 협업을 통한 中企제품 판매·홍보 강화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접수
  - 아임스타즈 홈페이지(<http://www.imstars.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정보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자가진단 → 상품선택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 01 마케팅역량 강화

### 사업개요

- ▶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 프로그램(마케팅·브랜드·홍보)을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 단, 홍보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는 ‘광고사전심의 규정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결정

### 지원내용

- ▶ 마케팅전략 수립 : 중소기업 보유제품에 대한 진단 및 판매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기초적 마케팅역량』 체질 개선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제품진단	• 소비자·전문가 리서치 활동을 통한 제품의 시장가치판단 및 개선방향 도출
마케팅전략수립	• 유통채널 MD(바이어) 및 마케팅 전문가의 코칭을 통한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 제품개선 : 마케팅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상품성 향상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성능 향상·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 지원
  - 마케팅전략 수립' 지원업체 또는 공동AS 참여기업에 한해, 최대 15백만원 한도
- ▶ 브랜드개발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전략 수립, 홍보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 전략 및 콘셉트 수립·분석 등 지원
- ▶ 매체 홍보 :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제품·중소기업 홍보 지원
  - 최대 30백만원 한도

###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 VAT제외)

구분	사업비 부담내역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마케팅 역량강화	50백만원(70%) 한도	21백만원(30%)	71백만원(100%)

**추진일정**

신청·접수	선정평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1월~3월	2~4월 초	3월~12월

\* 마케팅역량 강화, 세부지원 프로그램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음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상업팀 ☎ 02-6678-9327, 9335

**홈페이지**

www.imstars.or.kr | 바로가기 goo.gl/MHgnqz

## 02 온라인 시장 진출

### 사업개요

- ▶ 민간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과 연계하여 우수제품의 판매 기획전 개최 및 입점 기회를 제공

### 지원규모

- ▶ 온라인쇼핑몰 30회 내외, TV홈쇼핑 70회 내외, V-커머스 70회 내외 등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 지원제의 품목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 지원내용

- ▶ 온라인 상품기획전 :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연계하여, 우수제품 기획전 및 홍보 지원
  - \* G마켓, 옥션, 롯데몰, CJ몰 등
- ▶ 홈쇼핑 방송지원 : 5개 TV홈쇼핑사\*와 연계하여, 창의혁신제품 판매방송 지원
  - \* 롯데, 현대, CJ, GS, 공영
- ▶ Video-커머스 방송지원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동영상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방송 지원
  - \* Video-커머스 :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쇼핑을 결합한 모바일쇼핑 방식

### 지원조건

구분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 홈쇼핑		V커머스
		4대사	공영사	
정부 지원	100%	영상제작비 80% (5백만원 한도)	홈쇼핑사에 방송대금 지급 (12백만원)	(100%)

\* 기업부담 : 온라인 유통망, 홈쇼핑에 따라, 판매수수료 부과(15% 내외)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전문기관매칭	지원	비고
온라인 상품기획전	2월~12월	2월	3~12월	
홈쇼핑 방송	2.1~8.31	2~4월	3~12월	
V커머스 홍보판매지원	2.1~8.31	2~4월	3~12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전략팀 ☎ 02-6678-9813

**홈페이지** [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 > 사업신청 > 유통지원사업 안내

## 03 정책매장 입점 지원

### 사업개요

-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통해 창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한 혁신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지원

### 지원대상

-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품목 : 수입제품, 1차 식품 등

### 지원내용

-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공간 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매장 형식으로 운영, 중기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홍보기회 제공
- ▶ '18년 정책매장 운영계획(안)

구분	운영 콘셉	운영 매장	판매수수료
공공형 매장	전시·홍보 > 판매	교통시설 등	18% 내외
민간형 매장	전시·홍보 < 판매	면세점, 백화점 등	25% 내외

###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입점	판매수수료
정책매장 운영	1월~11월	격월	매월	매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및 매장 변동가능

####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2~4

#### 홈페이지

www.imstars.or.kr > 사업신청 > 유통지원사업 안내

## 04 오프라인 기획전

### 사업개요

- ▶ 민간 대형유통망,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내에 기획판매전

### 지원규모

- ▶ 오프라인 유통망 기획적 10회 내외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건강보조/기능 식품,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 지원내용

- ▶ 대형유통망 : 주요 백화점 등과 유통센터가 협력하여 상품기획하고, 해당 유통망內 편집매장 방식으로 판매·홍보
  - 유통센터 : 우수제품 DB를 활용, 계절·테마별 상품기획 제안
  - 유통망 : 전문기관이 상품기획 제안을 보완하여 판매·홍보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은 해당 유통망 입점기회 부여
    - \* 최종적인 유통망 연계는 해당 민간 유통망의 협의 후 결정
- ▶ 공공기관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단기 특별판매전을 개최

###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획전	유통망 연계
오프라인 기획전	우수제품DB	분기	수시	3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조성단 유통판로팀 ☎ 02-6678-9732

**홈페이지** www.imstars.or.kr | 바로가기 goo.gl/BZ93ka

## 05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전시회 개최로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판로확대, 홍보강화 등의 기회 부여

### 지원규모

- ▶ 200개 내외 중소기업(국내·외 바이어 100여명 참가)

### 지원대상

- ▶ 국내 중소기업 및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기타 참여형태 : 유관기관, 지자체, 공동브랜드, 대형유통업체 등

###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판로유공자 시상식
- 대한민국 히트 스타상품 TOP5 공개오디션(공중파 생방송)
- 국내외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민간유통망과 연계한 “아임스타즈워크” 판매행사 및 홍보

###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시회 참여
2018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3월~5월	5월	6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사업팀 ☎ 02-6678-9325, 9328

홈페이지

www.imstars.or.kr | 바로가기 goo.gl/Xk6Wnn

## 06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사업개요

-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A/S 상담·처리를 지원하는 A/S망 구축·운영

### 지원대상

- ▶ 국내 공장에서 지원대상 17개 제품군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 지원대상 17개 제품군 : 생활제품군, 주방가전군 등  
\* 지원 제외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건설부자재, 부품, 중간재, 의류, 일회성·소모성 생활 소비재, 가공식품 등 A/S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군

### 지원내용

- ▶ A/S상담 : 공동A/S콜센터를 통해 제품 사용법, 고장, 교환 등 상담 안내
- ▶ A/S처리 : 전국 126개 A/S대행 지점망을 구축하여 고장제품 수리 지원

### 지원조건

구분	사업비 분담내역	
	정부 보조금	업체 부담금
공동A/S 상담지원	70%	30%

###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수행
공동A/S지원	연중	분기별 2회	1~12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기획팀 ☎ 02-6678-9311, 9316

홈페이지 [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 | 바로가기 [goo.gl/Kxzpvv](http://goo.gl/Kxzpvv)

## 6.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사업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공인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판로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 (20개사)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소공인 자부담비율은 최소 20% 이상
-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소공인 : (1차) '18. 2. 12(월) ~ 3.7(수) 18:00까지
  - (2차) '18. 4. 2(월) ~ 4.20(금) 18:00까지
  - 사회적경제기업 : '18. 2. 12(월) ~ 3.9(금) 18:00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a href="http://www.gosims.go.kr">www.gosims.go.kr</a>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일반 소공인 ☎ 042-363-7909, 7903, 7911 / 사회적 경제기업 ☎ 042-363-7723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 | 바로가기 [goo.gl/Wvm62E](http://goo.gl/Wvm62E)

## 7.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도, 상품배송 등 협업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 사업개요

#### ▶ 지원분야

구분	사업명	지원한도
① 전국단위 협업화	• 전국 규모 슈퍼 연합회의 동네슈퍼 공동브랜드, 협업화 시스템 구축, PB상품개발, 공동마케팅 등 지원	5억
② 지역단위 협업화	• 지역 슈퍼조합의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점포환경, 경영개선 등 지원	1.7억
③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 중소유통 물류센터에 상품배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송시설, 장비, 배송구역, 인력 등을 지원	1.3억

※ 지원분야 ①은 단일신청만 가능하며, ②, ③은 중복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전국단위 협업사업 운영시스템 개발, 공동브랜드 및 PB상품 개발, 공동구매·마케팅 등 협업사업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국비지원한도	자부담
전문인력	• 협업사업관리 전문인력 (지역 협의체 협업관계 형성, 공동브랜드, 협업시스템 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협업사업 전담관리 인력) * 1인당 국비 최대 월 300만원(자부담별도)	27백만원	30% 이상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 전국 공동구매, 온라인 수발주, 사업관리 등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지원	220백만원	20% 이상
공동브랜드 개발	• 동네슈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지원 (네이밍, BI 를 포함한 디렉토리 북 제작 등) • 동네슈퍼 표준점포 모델 개발 및 보급지원	70백만원	20% 이상
공동구매/ 마케팅	• 공동구매 : 전국 공동구매, 상품기획, PB상품 개발 등 • 공동마케팅 : 전국 공동 할인행사, 사업홍보 등	250백만원	10% 이상
* 국비지원 총 한도		500백만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신청 및 접수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
- ▶ 신청기간 : '18. 2. 14(수) ~ 3. 9(금) 18:00까지

문의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49  
 〈신청문의〉 e나라도움 ☎ 1670-9595

홈페이지

www.semas.or.kr | 바로가기 goo.gl/CdmoYD

## 8. 2018 중소기업명품마루 업체선정

### 모집대상

- ▶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생산 상품
- ▶ 국내 우수 중소기업으로 제안 상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
- ▶ 국내·외 제조 공장을 보유하여 상품을 자체 생산 하거나 국내·외 공장에 위탁하여 OEM 생산하는 업체
  - ※ 미 자격자가 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자격 즉시 해지

### 모집분야

- ▶ 일반 소비재 상품(독창적 아이디어) 및 멀티샵 전시판매 가능 제품
  - 패션 : 패션잡화, 공예, 기념품, 기타 패션용품 등
  - 뷰티 : 화장품류
  - 식품 : 가공식품
- ▶ 친환경 유기농 제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특산품등
  - 생활용품 : 생활아이디어제품, 리빙/주거용품, 전자기기(전자기기, 액세서리 등)

### 신청방법(상시접수)

- ▶ 분기별 접수
- ▶ 접수방법 : maruseoul@korailtravel.com  
(이메일접수) 이메일 접수 제목 : 000(업체명)입점신청서(1지망: 000역점)
- ▶ 제출서류
  - 중소기업명품마루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 중소기업명품마루 입점 희망 제품제안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혹은 제조/판매원이 상이할 경우 OEM관련 서류 사본 1부.
  - 기타 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접수)증/디자인·제작의뢰서 각종 증빙서류.
  - 중소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다음 중 택1 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확인증 (중복 시 우선제출)</li> <li>- 소상공인 확인서</li> <li>-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중기업 확인서 (공인세무사가 발행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인정)</li> <li>- 벤처기업 확인서</li> <li>- 기타 :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	--

※ 제출기한 까지 필요서류 미제출시 서류 탈락처리

※ 추후 요청 시 증빙자료 원본 별도 제출

### 유의사항

- 매장의 이미지 훼손, 사회통념상 공공성 저해 행위 등 적발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즉시 퇴점 조치예정
- 유통업 등 중간 판매 사업자 참가 제한
- 진열공간 제한으로 부피 큰 제품 입점제한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귀속

문의처

코레일관광개발 유통사업처 유통영업팀 ☎ 02-2084-7751

홈페이지

<http://co.korailtravel.com> | 바로가기 [goo.gl/a5c215](http://goo.gl/a5c215)

## 9.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품기술서 접수

### 사업내용

- ▶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기술서 상시접수를 통해 상품 DB를 구축하여 유통채널의 수요에 맞는 판로 지원 연계 추진

### 참여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활용계획

- ▶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활용
- ▶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상품 등록 및 판매
- ▶ TV홈쇼핑, 온라인(오픈/소셜마켓) 채널 입점 등 상품 추천
- ▶ 사회적경제박람회 상품관, 체험관 등 구성 활용
-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기획전·특별전, 구매상담회 등 활용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개최하는 특별전에 상품 활용
  - 유통 채널별(생협, 백화점, 홈쇼핑 등)로 개최하는 품평회 및 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등에 상품 활용
- ▶ 상품성, 사회적 가치 등이 우수한 상품들을 선별\*하여 유통채널 시장 수요에 맞는 상품 연계 및 활용  
※ 상품 선별은, 유통채널 입점 기준에 적합한 상품 우선순위 고려
- ▶ 기타 판로지원 관련 사업에 활용
- ▶ 상품기술서 접수 체계



- ▶ 유통채널 진출 우대 상품기술서
  - 스타상품(기업)으로 선정된 상품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소셜 미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품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지원의 경우 홈쇼핑사, 오픈/소셜마켓 등의 담당자 추천이 있는 상품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품의 내용

## 접수방법

- ▶ 기간 : 공고일로부터 ~ '18.12.14(상시접수)
- ▶ 접수처 : 이메일(store@ikosea.or.kr)로 제출서류 1부 송부

문의처

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031-697-7862, 7836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 바로가기 goo.gl/Q7n8UR

## 10.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 사업개요

- ▶ 판로전문가(MD, QA등)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지닌 협동조합 상품을 발굴하여, 유통채널 입점 연계 및 협동조합 상품DB 구축·관리

### 지원대상

- ▶ 참가자격 : 상품화가 이루어진 제품을 보유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 평가품목 : 식품, 생활용품, 사무/기업용품 등  
\* 단,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

### 지원규모

- ▶ 150개\* 제품 내외

### 지원내용

- ▶ 1협동조합 상품의 품질, 디자인 등 질적 수준 제고 및 맞춤형 상품개선 지원
- ▶ 진흥원과 협업하는 TV홈쇼핑 판매방송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 민간 유통채널(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품평회, 상품 기획전 등 행사 개최 시 참여기회 제공  
\* 단, 민간유통채널 입점지원의 경우 유통채널 담당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 공공기관 우선구매 설명회, 상담회 등에서 제품 활용 및 홍보 기회 제공

### 신청 및 접수

-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http://www.coop.go.kr))에 추후 공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4

홈페이지

[www.coop.go.kr](http://www.coop.go.kr) | 바로가기 [goo.gl/JW2ai7](http://goo.gl/JW2ai7)

## 11. 협동조합 상품물 운영

### 사업개요

- ▶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안내하여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의 구매지원

### 지원대상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지원내용

- ▶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공공기관, 기업,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협동조합 전용 상품 소개 사이트
- ▶ 상품에대한 정보, 구매관련 문의처,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제공
- ▶ 협동조합 상품물은 상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지않으나, 소비자가 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구매관련 문의처 정보 및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제공

### 신청 및 접수

- ▶ 한국사회적협동조합 협력운영팀 : 031-697-7748

문의처

한국사회적협동조합 협력운영팀 ☎ 031-697-7748

홈페이지

<http://www.coop.go.kr>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 04 기타 정책제도

# 04 기타 정책제도

고용노동부

## 1. 사회적기업

### 사업개요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1.1~12.30
-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한 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인증 요건

-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종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

▶ 유급근로자 고용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문의 및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우13292)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 ~ 12.30. 내 상시접수)

-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등록한 이후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으로 문의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참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1~7726 📠 031-697-7761
홈페이지	<a href="http://www.socialenterprise.or.kr">www.socialenterprise.or.kr</a>

## 2. 마을기업

### 마을기업이란

-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대상사업(예시)

- ▶ 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사업
- ▶ 전통시장 · 상가 활성화 사업
- ▶ 공공부문 위탁사업
-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 자연생태관광 · 자전거활용 등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 등

### 마을기업 심사와 선정절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

### 마을기업 선정요건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마을기업의 공공성

- 마을기업이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실태조사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민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연도말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사업종료 후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재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재선정 사업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지원
  -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고용으로 한정
  -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역사회공협활동은 반드시 이행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 이상을 공동출자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홈페이지 <http://www.moi.go.kr/>

# 2018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5

온라인 쇼핑몰

# 05 온라인 쇼핑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COOP 협동조합 상품몰



### 지역/홈페이지

- ▶ 전국 : [www.coop.go.kr](http://www.coop.go.kr)  
 제품몰 : <http://www.coop.go.kr/COOP/mall/product/main.do>  
 서비스몰 : <http://www.coop.go.kr/COOP/mall/service/main.do>

### 쇼핑몰 소개

- ▶ 협동조합 상품몰과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상품몰을 통해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유도

### 입점대상

-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입점 품목

- ▶ 농축산물, 지역특산물, 건강식품, 반찬/가공식품, 음료/간식/도시락
- ▶ 일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 ▶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만 우선구매 상품물에 입점

### 지원내용

- ▶ 협동조합 관련 판로 정보 제공
-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우선구매 상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 입점방법

- ▶ 입점시기 : 상시
- ▶ 입점단계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상품등록
- ▶ 담당자가 상품내용을 확인 후 상품등록에 이상이 없으면 상품등록 완료

### 필요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jpg 압축, 온라인 신청시 첨부)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 031-697-7745~7746

## 2. 함께누리



### 지역/홈페이지

▶ 전국 : [www.hknuri.co.kr](http://www.hknuri.co.kr)

### 쇼핑몰 소개

▶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개척/홍보/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만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 입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제품 및 재화/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사업자등록必)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주문 및 배송 처리를 포함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 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사회적경제 기업

### 입점 품목

▶ 사무용품, 생활용품, 도서, 꽃배달, 공정무역 상품 등

### 지원내용

- ▶ 입점수수료 면제
- ▶ 공공구매 영업
- ▶ 온, 오프라인 마케팅
- ▶ 정산 및 CS 관리 대행
- ▶ 진흥원사업 우선 지원
- ▶ 무료 카달로그 제작 및 상품 사진촬영 지원

### 입점방법

- ▶ 온라인몰 상단 메뉴탭 “입점신청”클릭 → 업체/상품 관련 정보 기입 → 필요 제출 서류 첨부 → “등록하기”

### 필요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 / 공장등록(해당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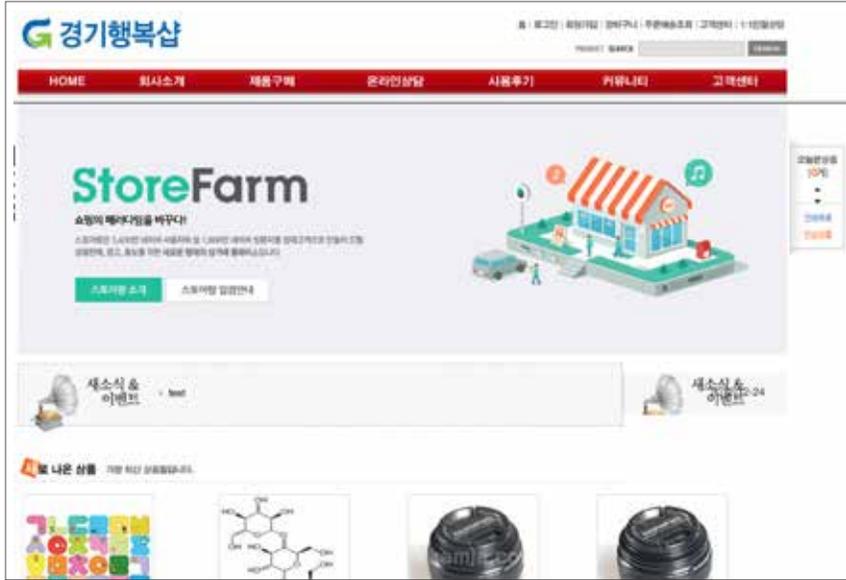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카드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문의처

함께누리 담당자 ☎ 02-2222-3886, 3853 ✉ hknuri@hknuri.co.kr

### 3. 경기행복샵



#### 지역/홈페이지

▶ 전국 : [www.hknuri.co.kr](http://www.hknuri.co.kr)

#### 쇼핑몰 소개

▶ 경기행복샵은 네이버 쇼핑과 (재)경기테크노파크가 함께 경기도 중소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쇼핑몰로 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운영

#### 입점대상

- ▶ 현재 경기도 내 네이버스토어팜 사업자 판매자
-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생산 제품(제품을 직접 개발, 제작, 제조 또는 OEM 생산기업)
-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 \* 단순 유통기업, 수입제품판매, 네이버스토어팜 판매 기준 미취급 품목 제외

#### 입점 품목

▶ 디지털/가전, 가구/인테리어, 생활/건강용품 등

### 지원내용

- ▶ 판매자 네이버스토어팜 매출연동 수수료 2% 할인지원
- ▶ 네이버 온라인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 ▶ 판매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
- ▶ 제품 촬영 지원

### 입점방법

- ▶ 입점절차 : 경기행복샵 지원사업 모집공고(1회/월) → 신규입점기업 제품평가 → 선정기업 결과통보  
→ 스토어팜 쇼핑몰 입점 → 경기행복샵 제품등록 → 네이버지식쇼핑 및 경기행복샵 판매
- ▶ 입점비용 무료/ 경기행복샵 입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필요 제출서류

- ▶ 입점신청서 등  
\* 입점신청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일반공고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수수료

- ▶ 네이버 쇼핑몰 수수료 5.74%에서 2% 할인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 031-500-3035 ✉ [kkamja@gtp.or.kr](mailto:kkamja@gtp.or.kr)

## 4. 경기사이버장터



### 지역/홈페이지

- ▶ 경기도 : [kgfarm.gg.go.kr](http://kgfarm.gg.go.kr)

### 쇼핑몰 소개

- ▶ 경기사이버장터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 쇼핑몰로 유통과정 없이 농가와 직접 연결하여 경기도내의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

### 입점대상

-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기업체)
-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제조/가공업체(기업체)

### 입점 품목

-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물

### 입점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 ▶ 신청방법 : 경기도사이버장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 신청자 조사 평가
  - 신청서류 검토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해, 매월 30일까지 현지실사 및 평가
- ▶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
- ▶ 상품 입점

### 필요 제출서류

- ▶ 입점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 ▶ 사업자 등록증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카드수수료 3.1%, ok캐쉬백 적립수수료 2% 등

### 입점 시 우대항목

- ▶ G마크인증 농,특산물 우선 입점

문의처 경기도사이버장터 운영센터 ☎ 031-8008-3922~4

## 5. 강원곳간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 [www.강원곳간.com](http://www.강원곳간.com)

### 쇼핑몰 소개

-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공구매물
- ▶ 소비자에게는 도내 사회적경제 물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들에게는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쇼핑몰

### 입점대상

- ▶ 강원도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 쇼핑몰 규모

- ▶ 61개 업체, 208개 제품

### 지원내용

- ▶ 제품사진 촬영 지원
- ▶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 온라인 이벤트 지원
- ▶ 특판 현장 지원

### 입점방법

- ▶ 이메일을 통해 제휴 및 제안 접수(coop\_box@naver.com), 연락처/성함 기입 → 담당자검토(약 2~3일 소요) 후 연락 → 채택 및 실행

### 필요 제출서류

- ▶ 입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증서(사회적기업), 단가표 등

### 수수료

- ▶ 기본 수수료는 15%이나,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별로 문의 바람

### 입점 시 우대항목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우수상품 50선

문의처

강원곳간 고객센터 (주) 소박한풍경 ☎ 033-256-0765 ✉ coop\_box@naver.com

## 6. 강원마트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 [www.gwmarket.kr](http://www.gwmarket.kr)

### 쇼핑몰 소개

- ▶ 강원도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청정강원도 상품만을 판매하는 강원도 대표 인터넷 쇼핑몰

### 입점대상

- ▶ 강원도 내 소재 기업으로 직접 제조 / 가공 기업
- ▶ 강원도 내 1차 농산물 생산자
- ▶ 생산자 단체 및 공공기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우체국 등)  
\* 단순 유통업 제외

## 지원내용

-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 ※ 메일(gw-mart@naver.com)발송 및 방문 제출

## 입점방법

-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 **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능력 평가
-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 **쇼핑몰 제작지원**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카드수수료

**문의처**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마케팅 1팀

☎ 033-749-3315, 3317, 3318 ✉ help@gwmart.kr

## 7. 원주물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원주시 : [wonju-mall.co.kr](http://wonju-mall.co.kr)

### 쇼핑몰 소개

- ▶ 강원도 원주시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판매 관리 교육 및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독자적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함

### 입점대상

- ▶ 강원도 소재기업
- ▶ 직접 생산 및 제조 기업(공익 단체 가능)
- ▶ 쇼핑몰 운영인력 및 능력 보유 기업

### 입점 품목

- ▶ 축산, 쌀/잡곡, 과일, 채소, 가공식품/떡류, 김치/반찬류, 건강식품, 장/조청/식초, 생활용품, 원주 물

## 입점방법

-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없음

문의처

☎ 033-749-3315, 3317, 3318 ✉ gw-mart@naver.com

## 8. 인제물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인제군 : [인제물.com](http://인제물.com)

### 쇼핑몰 소개

- ▶ 인제지역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판매관리 교육 및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독자적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입점대상

- ▶ 강원도 소재기업
- ▶ 직접 생산 및 제조 기업(공익 단체 가능)
- ▶ 쇼핑몰 운영인력 및 능력 보유 기업

### 입점 품목

- ▶ 쌀/잡곡, 과일, 채소, 축산물, 건강식품, 수산물/건어물, 가공식품, 반찬/장아찌/젓갈, 장류

## 입점방법

-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없음

문의처

☎ 033-749-3315, 3317, 3318    ✉ gw-mart@naver.com

## 9. 홍천물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홍천군 : [홍천물.com](http://홍천물.com)

### 쇼핑몰 소개

- ▶ 홍천물은 홍천지역의 우수 제품과 청정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청정 홍천의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만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쇼핑몰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음

### 입점대상

- ▶ 강원도 소재기업
- ▶ 직접 생산 및 제조 기업(공익 단체 가능)
- ▶ 쇼핑몰 운영인력 및 능력 보유 기업

### 입점 품목

- ▶ 쌀/잡곡, 축산, 과일/채소/임산물, 가공식품, 김치/전통장, 건강식품, 생활용품

### 입점방법

-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없음

문의처

☎ 033-749-3315, 3317, 3318 ✉ gw-mart@naver.com

## 10. 하늘다음태백



### 지역/홈페이지

- ▶ 강원도 태백시 : [www.taebaekmall.com](http://www.taebaekmall.com)

### 쇼핑몰 소개

- ▶ 태백시청 신활력사업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태백시의 농/특산물을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공급

### 입점대상

- ▶ 강원도 태백시 소재 기업 혹은 개인

### 입점 품목

- ▶ 태백나물, 태백김치, 태백과일 등 가공 조리식품

### 입점방법

- ▶ 위탁업체인 태백농업주식회사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방문 상담  
(기존 입점상품과 중복되는 상품은 입점 불가능)

### 수수료

- ▶ 품목별 수수료 협의
- ▶ 관리비, 위탁수수료, 카드수수료 별도

문의처 하늘다음태백 고객센터 ☎ 033-553-0045

# 11. 와이팜



## 지역/홈페이지

- ▶ 세종특별자치시 : [www.yfarm.co.kr](http://www.yfarm.co.kr)

## 쇼핑몰 소개

- ▶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의 안정과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세종시가 추천하고 보증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입점대상

- ▶ 세종시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업체)
  - \* 복숭아, 배 농가는 기존 입점농가 외에 추가입점은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입점 가능

## 입점 품목

- ▶ 농수축산물, 김치, 가공식품, 웰빙식품

### 입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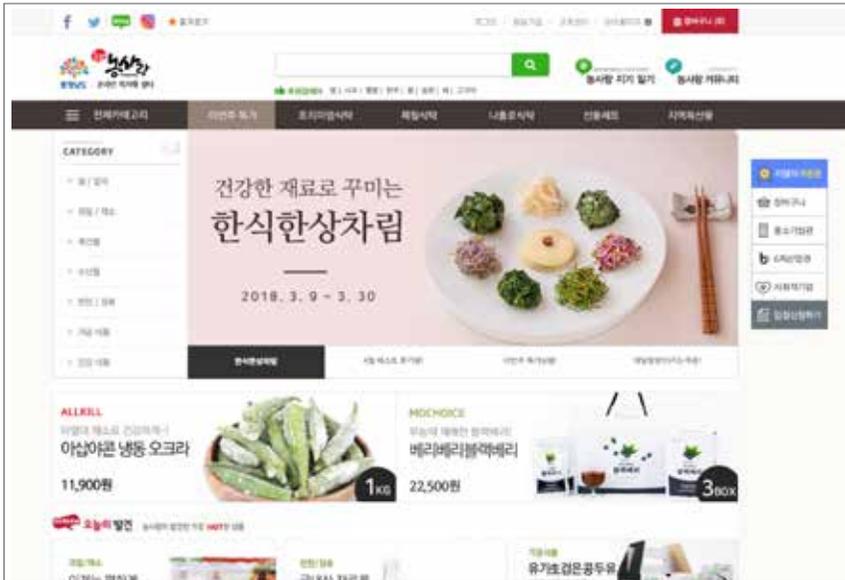
- ▶ 와이팜 홈페이지에서 입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와이팜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제출
  - ▶ 입점확정 통보를 받은 후, 홈페이지제작신청서(링크한 것)을 작성 제출
  - ▶ 와이팜에 배송상품과 똑같은 사진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상품을 제출하여 쇼핑몰에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
- ※ 수시 가격변동사항에 대하여 운영센터에 통보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판매수수료 : 와이팜 영농조합법인의 내규
- ▶ 정산절차 : 와이팜 운영센터에서 소비자 주문일 기준, 월~일요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2주 후 목요일 정산, 매주 1회 농가별로 입금과 동시 내역서 송부

문의처 세종시 농산물 쇼핑몰운영센터 ☎ 044-864-2525~8

## 12. 농사랑



### 지역/홈페이지

- ▶ 충청남도 : [www.nongsarang.co.kr](http://www.nongsarang.co.kr)

### 쇼핑몰 소개

- ▶ 농사랑은 농·축산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장터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 입점대상

- ▶ 충남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
-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가공업체(원부재료 5%이상)  
\* 단, 유통업체는 입점 불가

### 입점 품목

-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ac l rm 가공품으로써 국내산물을 주 원료 또는 주 재료로 사용하여 충청남도 내 생산한 제품
-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물

-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 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ex.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입점방법

- ▶ 입점신청 : 연중 상시
- ▶ 신청방법 : 농사랑 입점 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 처리기간 : 3.5개월(상품 및 자료에 따라 다름, 사이트 첨부 파일 참조)
- ▶ 입점 최종 평가
- ▶ 입점 승인 및 계약 체결
- ▶ 상품입점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6%(카드 수수료 포함)

문의처

입점 담당자 ☎ 041-544-7951, 070-8672-0933~4 ✉ [sangsang01@daum.net](mailto:sangsang01@daum.net)

# 13. 따숨몰



## 지역/홈페이지

- ▶ 충청남도 / [www.ddasummall.co.kr](http://www.ddasummall.co.kr)

## 쇼핑몰 소개

-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공동쇼핑몰 따숨몰은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 입점대상

- ▶ 충청남도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 입점 품목

- ▶ 농축산물, 반찬/장류, 가공식품, 건강식품, 도시락/단체급식, 생활용품, 교육/문화/체험, 서비스, 컴퓨터 주변기기, 간병/요양/돌봄

## 입점방법

- ▶ 상시 입점 가능 : 입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

문의처 충청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 따숨몰 담당자 ☎ 070-5001-0261, 041-574-5573

# 14. 당진팜



### 지역/홈페이지

- ▶ 충청남도 당진시 : [www.dangjinfarm.com](http://www.dangjinfarm.com)

### 쇼핑몰 소개

- ▶ 지역농산물을 규모화, 단일화, 고품질화하여 대형유통업체, 식자재업체, 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

### 입점대상

- ▶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당진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 ▶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가공업체

### 입점 품목

- ▶ 당진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함
- ▶ 당진의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품
- ▶ 안정성 및 우수품질을 확보한 제품 우선입점추진

\* 충남도지사 품질인증Q마크 및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인증, 친환경인증 등

## 입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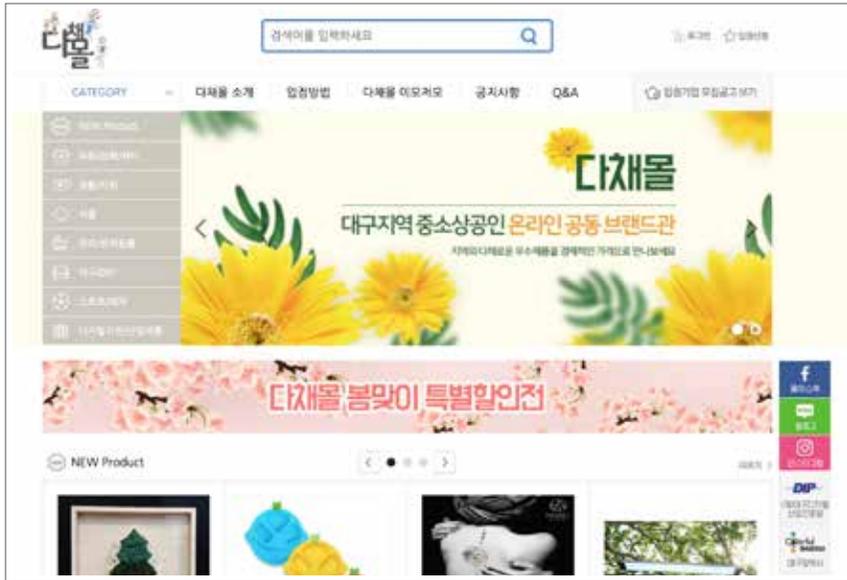
- ▶ 입점신청 : 연중상시
- ▶ 신청방법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및 당진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 입점평가 : 서류검토 및 입점의뢰상품 샘플로 평가함
- ▶ 입점승인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입점승인 공문발송후 계약체결
- ▶ 상품입점 : 입점상품 및 관련자료 제공 받아 웹페이지 구축 후 당진팜에서 판매추진

문의처

☎ 041-350-4989

✉ pbs620108@korea.kr

# 15. 다채물



## 지역/홈페이지

- ▶ 대구광역시 : [www.dachaemall.kr](http://www.dachaemall.kr)

## 쇼핑몰 소개

- ▶ 다채물은 대구광역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역 제조/유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브랜드관
- ▶ 대구지역 기업이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연계하여 다채물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원내용

- ▶ 네이버 연계 지원 : 네이버 지식쇼핑 연동 수수료 면제(2%, 3년간), 네이버 상품기획전(다채물관) 참가 지원
- ▶ 기업역량강화 지원 :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지원 : 국/내외 온라인 신규 판로 개척 지원, 다채물 팝업 스토어 운영 등
- ▶ 홍보 지원 :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블로그/SNS 활용 온라인 홍보지원 등
- ▶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다채물 입점기업 네트워크 세미나/간담회 개최

### 모집분야

- ▶ 일반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지역 소재의 제조업, 제조 기반 유통판매업, SW융합/지식기반 상품 취급 기업 등
-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대구지역 소재의 제조, 유통관련 사회적 기업
  - ※ 단순 유통/도/소매업 제외
  - ※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입점 품목

- ▶ 의류/잡화/뷰티, 생활/리빙, 식품, 유아/반려동물용품, 가구/DIY, 스포츠/레저, 디지털가전/산업 제품

### 입점방법

- ▶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입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 ▶ 선정결과 안내
-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 스토어팜 사업자 판매자 절차
- ▶ 스토어팜 정보제출 및 다채물 가입
- ▶ 다채물 상품등록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네이버 지식쇼핑 연동 수수료 면제(2%, 3년간)

문의처

☎ 053-655-0613    ✉ hyeim@dip.or.kr

⟨주소⟩ (우.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대흥동 387), 5층 506호

## 16. 사이소



### 지역/홈페이지

- ▶ 경상북도 : [www.cyso.co.kr](http://www.cyso.co.kr)

### 쇼핑몰 소개

- ▶ 경북의 품질 좋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를 경상북도가 엄선하여 입점 시키는 것은 물론, 수수료 없이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을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

### 입점대상

- ▶ 경상북도 내에 재배 생산된 농, 특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생산자단체로서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국내산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사용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함
-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 (기업체)
-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업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

### 입점 품목

-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 우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 (경상북도우수농산물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GAP)인증, 친환경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

### 입점방법

- ▶ 입점 신청 → 입점 최종 평가 → 입점 승인 → 상품 입점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판매대금의 5%
- ▶ 대금정산 : 매월 2회

문의처   사이소 고객 만족센터 ☎ 1644-4245   ✉ help@cyso.co.kr

# 17. 포항마켓



## 지역/홈페이지

- ▶ 경상북도 포항시 : [pohangmarket.pohang.go.kr](http://pohangmarket.pohang.go.kr)

## 쇼핑몰 소개

- ▶ 포항시에서 생산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우수농수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은 유통단계 없이 저렴하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점대상

- ▶ 경상북도 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농/축/수산물 및 관련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

## 입점 품목

- ▶ 곡물류, 과일류, 채소/버섯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품, 꿀/인삼, 공예품/특산물

## 입점방법

- ▶ [입점신청서 제출] → [입점농가 신청] → [입점결과 통보]

문의처 포항마켓 고객센터 ☎ 054-610-4111 ✉ [klpf1234@daum.net](mailto:klpf1234@daum.net)

## 18. 봉화장터



### 지역/홈페이지

- ▶ 경상북도 봉화군 : bmall.go.kr

### 쇼핑몰 소개

- ▶ 「봉화장터」는 봉화군이 운영하는 봉화군의 대표 쇼핑몰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택배, 도로의 발달로 유통의 구조가 변화하는 때에 도농직거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봉화장터」는 봉화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입점하실 수 있는 공공의 쇼핑몰입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봉화장터」에 입점하는 농업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가져올 변화에 봉화인과 함께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 입점대상

- ▶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
-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
- ▶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입점 품목

- ▶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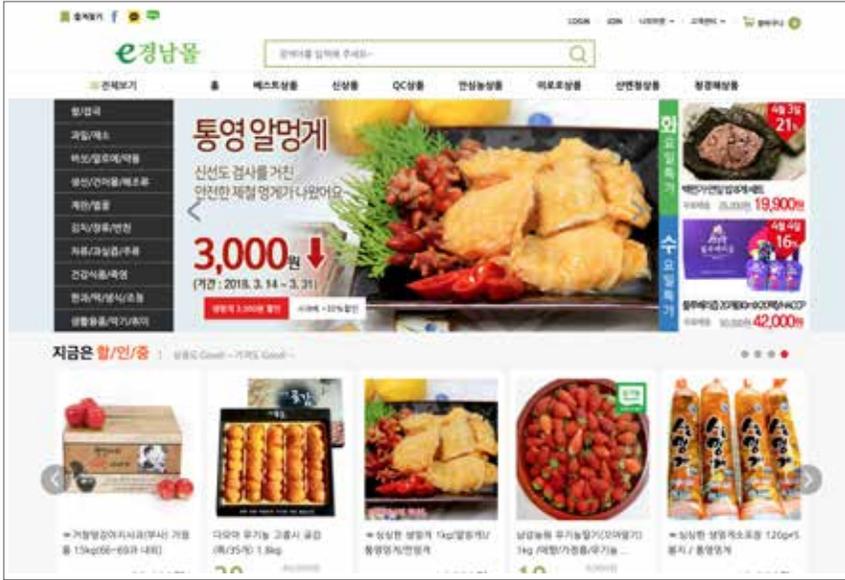
### 입점 방법

- ▶ 『봉화장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신청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생활경영담당 ☎ 054-679-6873 📠 054-679-6879

# 19. 경남몰



## 지역/홈페이지

- ▶ 경상남도 : egmall.net

## 쇼핑몰 소개

- ▶ 경상남도가 구축하여 (주)경남무역과 코아정보기술(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 입점대상

- ▶ 경상남도 내 사업장(본사 및 공장) 보유
- ▶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또는 제조/가공업체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업체 (농수산물 유통업체 제외)
- ▶ 경상남도 추천상품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상품이거나 안심농 회원농가로 농업기술원장의 추천을 받은 상품
-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 입점 품목

- ▶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과 그 가공품(국내산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사용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함)
-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유기, 도자기, 공예품 등)

### 입점방법

- ▶ 입점방법 : 입점신청 → 서류접수 및 검토 → 입점 심사 → 입점 승인 → 상품 등록 및 판매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없음
- ▶ 판매수수료 : 2%(카드 수수료 포함)

문의처    경남몰 고객센터 담당자 ☎ 055-284-1840

## 20. 거시기장터



### 지역/홈페이지

- ▶ 전라북도 : [www.jbplaza.com](http://www.jbplaza.com)

### 쇼핑몰 소개

- ▶ 전라북도 농특산물 쇼핑몰로 중간상의 개입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비영리 직거래 장터, 소비자들은 농가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생산농가 및 입점 업체들은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

### 입점대상

- ▶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등록증 보유한 업체
- ▶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 ▶ 공장이 등록된 도내 소재 제조 사업장(소매, 유통업 제외)

### 입점 품목

- ▶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
-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합죽선, 한지공예, 목공예품 등) 및 도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 ▶ 주말농장, 과수임대, 체험상품 등
  -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품목 대상에서 제외함 (예 :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입점 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 ▶ 신청접수 :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
- ▶ 서류접수 : 상품군별 관련 서류를 거시기 장터 고객센터 접수 (접수방법 선택 가능)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무료
  - \* 카드/실시간계좌이체(제휴할인 포함) 전자결제에 이용되는 직접 수수료만 차감 후 정산

## 21. 순창로컬푸드



### 지역/홈페이지

- ▶ 전라북도 순창군 : [www.sunchangfood.kr](http://www.sunchangfood.kr)

### 쇼핑몰 소개

- ▶ 순창로컬푸드 행복한 장터는 순창군 11개 읍·면 개별농가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과 순창군 소재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업체가 생산한 우리 농산물 가공품만을 판매하는 농산물 장터

### 입점대상

- ▶ 순창군소재

### 입점 품목

- ▶ 쌀/잡곡, 과일/견과, 채소, 축산, 농가공, 공예,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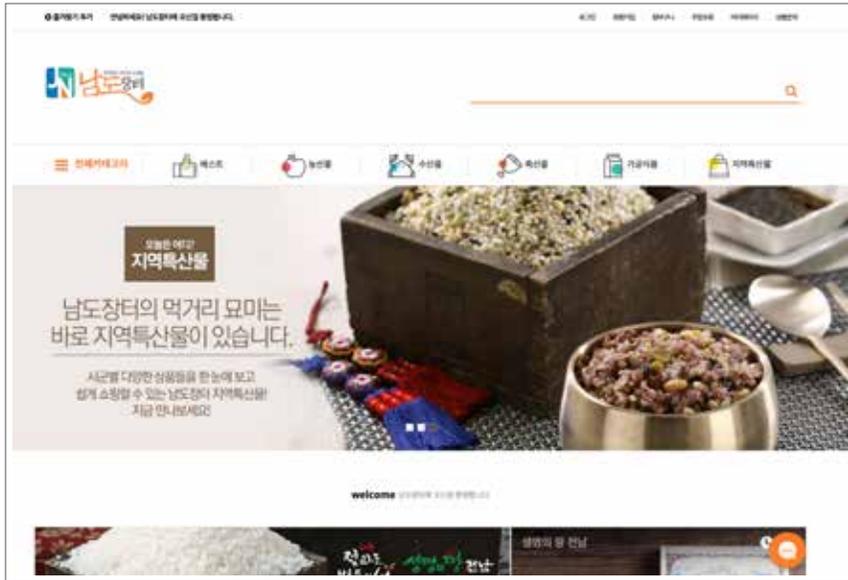
### 입점 방법

- ▶ 순창로컬푸드홈페이지 → 입점신청 → 순창물 담당자 확인후 연락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10%
- ▶ 판매수수료 : 판매대금의 10%

## 22. 남도장터



### 지역/홈페이지

- ▶ 전라남도 : [www.jnmall.kr](http://www.jnmall.kr)

### 쇼핑몰 소개

- ▶ 전라남도 농, 수, 축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전라남도 22개 시, 군에서 생산된 농, 수, 축산물을 판매

### 입점대상

- ▶ 신청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신청일 현재 농수산물 가공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등록할 상품별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하는 자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입점 품목

- ▶ 쌀, 농수축산물, 반찬류, 김치류, 건강식품, 공예/특산물

### 지원내용

- ▶ 남도장터 입점업체(생산자협의회) 워크샵 및 상품 컨설팅
- ▶ 각종 판촉행사 참여,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상장, 대형유통업체 고정입점 추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한 홍보/판촉활동 연중 전개

### 입점방법

- ▶ [입점 신청/접수(시군)] → 서류심사(도, 시군) → 현장심사(시군, 남도장터) →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 (남도장터) → 입점 계약 → 업체 및 상품정보등록(사진 촬영 등) → 판매개시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무료
- ▶ 판매수수료 : 2%(전액 도 세외수입으로 납입), pg수수료 별도

문의처 남도장터 고객센터 ☎ 061-289-3867

## 23. e제주몰



### 지역/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 [mall.ejeju.net](http://mall.ejeju.net)

### 쇼핑몰 소개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터넷 쇼핑몰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지원

### 입점대상

- ▶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서
  - 도내 제조업체 생산제품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 OEM 제품의 경우는 원재료가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기타 전시판매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상품

### 입점 품목

▶ 지역특산가공품, 건채류, 수산물, 공예품, 보석류, 향수류, 약세사리 등

## 입점방법

- ▶ 입점신청
- ▶ 입점승인 및 계약체결
- ▶ 상품입점

## 수수료

- ▶ 품목별, 형태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건별로 문의 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판매장운영팀 ☎ 064-751-3320

## 24. 아임쇼핑몰



### 홈페이지

- ▶ [www.immall.co.kr](http://www.immall.co.kr)

### 쇼핑몰 소개

- ▶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모바일쇼핑몰의 3-Screen 판로체제를 바탕으로 주주사와 연계한 창의혁신 및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 판매를 지원

### 지원내용

- ▶ 방송&온라인 판매 지원
- ▶ 해외수출 지원

### 입점방법

- ▶ ① 입점 제안 ② 제안 검토 ③ MD상담 ④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방송 상품만 해당) ⑤ 품질검사 QA ⑥ 협력사 등록 ⑦ 전자계약 체결 ⑧ 방송&온라인 판매 진행

### 수수료

- ▶ 입점수수료 : 평균 2~3%
- ▶ 판매수수료 :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입점 체결시 협의

문의처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02-6350-8888, 8889

## 25. 아임스타즈



### 홈페이지

- ▶ [www.imstars.or.kr](http://www.imstars.or.kr)

### 쇼핑몰 소개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 사이트

### 지원내용

#### 1. 마케팅지원사업

##### 1) 마케팅 역량강화

- ▶ 마케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 프로그램(마케팅·브랜드·홍보)를 통한 집중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성·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 2) 우수중소기업 마케팅대전

- ▶ 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판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전시회 개최

- 전시회 구성
  - 마케팅지원사업 참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판로유공자 시상식
  - 대한민국 히든스타상품 TOP5 공개오디션(공중파 생방송)
  - 국내·외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중소기업 판로주간 “아임스타즈워크” 판매행사 및 홍보 지원

### 3) 공동A/S지원

-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인력 등 부족으로 스스로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적인 중소기업 A/S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 사업내용
    - 중기 제품의 고객대응(A/S상담·처리) 체계 지원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고객서비스 품질 만족도 제고
    - (고객상담지원) 중소기업 공동A/S 고객센터 운영
    - (고객상담 및 A/S전산시스템 지원) A/S전산프로그램 활용 지원
    - 전국적 A/S서비스망 구축지원 및 연계인프라 지원

### 4) MRO 납품지원

- ▶ 국내 유일의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지원센터로서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몰 시스템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중소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구매대행 등 지원

## 2. 유통지원사업

### 1) 아임셀러

- ▶ 중소기업 제품의 주요 오픈마켓 및 온라인 종합몰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 국내 11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능 무료 제공
    - 아임셀러를 통한 온라인몰 입점방법 등 사용안내
    - 아임셀러와 온라인몰 연계를 위한 API키 발급
    - 아임셀러 소개 및 온라인마케팅 방법 무료 교육(연10회)
    - \* API키 : 아임셀러와 온라인몰의 상품, 주문, 배송 등 판매정보 연동을 위한 통신언어
  - 입점대상
    -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
  - 문의
    - 온라인사업단 온라인전략팀 ☎ 02-6678-3802, 3803

## 2) 4대TV 홈쇼핑방송지원

- ▶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TV홈쇼핑사와 공동으로 우수중기제품을 선정, 방송판매를 통한 판로지원 추진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www.imstars.or.kr-상단 사업신청-사업신청-2017년4대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공고
    - 문의 : 온라인사업단 온라인전략팀 ☎ 02-6678-9812
  - 사업신청 제한
    - 기존 TV홈쇼핑 방송상품 제외
  - 지원내용
    - 방송판매 수수료 감면
    - 영상제작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4대홈쇼핑(CJ, GS, 롯데, 현대), 방송지원 40회(상품)
      - \* 홈쇼핑사별 10회 상품 방송 예정
  - 지원대상
    -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TV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분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기능식품, 의약품 또는 산업재 등 방송 지원 제외
    -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목적이므로, 기존, TV홈쇼핑을 통해 방송되었던 제품은 지원 제외

## 3) 공영홈쇼핑방송지원(국내)

- ▶ 공영홈쇼핑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TV홈쇼핑 방송지원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 아임스타즈 사업신청 - 유통지원사업 - 공영홈쇼핑 방송지원(국내)
      - \* 아임스타즈 공지사항을 통한 세부 신청일정 공고예정
  - 지원내용(연간 30개제품 내외)
    - 공영홈쇼핑사와 협력을 통해 회당 약 40~50분 방송판매 지원
    - 정부는 방송 판매·홍보비를 홈쇼핑사에 지급하고, 홈쇼핑사는 우대 판매수수료 적용
  - 문의 : 온라인사업단 온라인전략팀 ☎ 02-6678-9813

## 4) V-커머스 홍보판매지원

- ▶ 민간 V-커머스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 동영상판매 및 온라인홍보지원
  - 지원내용
    - 동영상판매 및 온라인홍보 : 상품별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몰, SNS등을 활용한 홍보 판매 지원
      - \* 단, 본 사업은 영상제작지원 사업이 아님에 따라 제작된 영상은 참여 중소기업에 제공 불가
  - 사업추진절차

- 유통센터(참여기업모집) → 유통센터(서면검토 및 품평회) → 유통센터/V-커머스사(상품별 판매 영상제작) → 유통센터/V-커머스사(상품판매 및 온라인 홍보)

- 사업 참여신청
  - 신청기간 : 공지사항을 통한 별도 공고 예정
- 문의 : 온라인 사업단 온라인 전략팀 ☎ 02-6678-9813

### 5) 공영홈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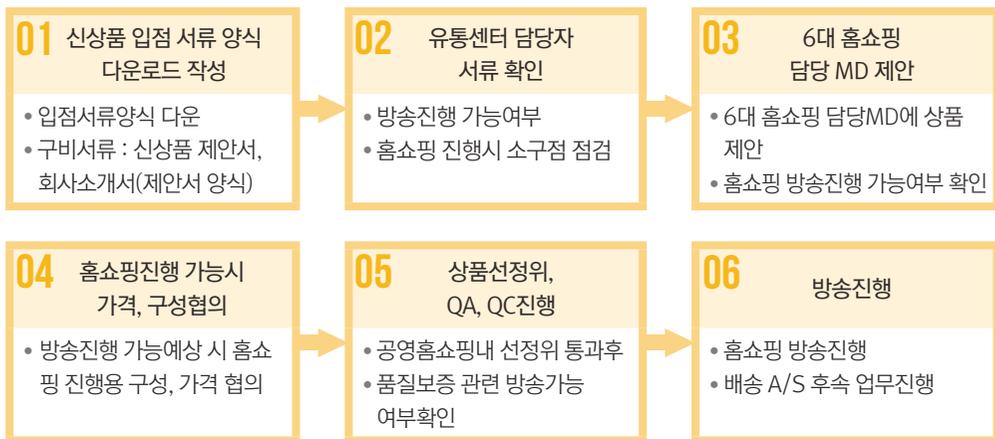
▶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판매대행(벤더업무) 현재 공영TV홈쇼핑, 현대, 롯데, GS 등 주요 홈쇼핑사에 방송판매 대행업무 진행중임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제조업체상품(ODM 상품제외)
- 사업내용
  - 공영TV홈쇼핑(인터넷, 모바일)방송진행을 위한 상품제안
- 신청방법
  - step1. 아임스타즈가입, 로그인)유통채널)공영tv홈쇼핑 →step2. 사업안내확인, 자가진단, QA, QC 내용확인 → step3. 공영TV홈쇼핑 상품제안 대행업무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연중

### 6) 6대 TV홈쇼핑

▶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판매대행(벤더업무) 현재 공영TV홈쇼핑, 현대, 롯데, GS 등 주요 홈쇼핑사에 방송판매 대행업무 진행중임

- 지원방법



- 사업내용
  - TV홈쇼핑 : GS, CJ, 롯데, 홈앤, NS, 현대홈쇼핑 벤더업무
- 문의 : 홈쇼핑사업단 홈쇼핑1팀, 2팀 ☎ 02-6678-9617,9629

### 7) 정착매장(백화점 4층)

-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하여 행복한 백화점 정책매장 입점판매,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판로확대 도모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소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
    - 생활가전, 주방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가구,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A/V기기, PC, 조명기기, 건강보조기기, 생활용품, 주방용품, 뷰티용품 및 화장품 등 소비재 완제품 14개 제품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상품입점·판매공간 제공
      - \* 매장 인테리어, VMD(Visual Merchandising)등 백화점 부담
    - 입점상품 판매대행 및 판촉·홍보지원
      - \* 개별기업에서 자체 판매사원 운영 가능
    - 대형 유통업체 출장판매, 바이어 상담 등 마케팅 연계 지원
  - 매장현황
    - 판매시설 : 2,233㎡
  - 지원절차
    - 입점상담 → 상담 → 입점승인 위원회 → 입점확정
  - 신청 방법
    - 발굴연계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 유통마케팅지원사업 → 해당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제반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 사업담당
    -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2

### 8) 정착매장(면세점)

- ▶ 상권이 우수한 공공, 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판매 촉진
  - 신청 자격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 해당판매장 사업 신청시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4층 아이쇼핑)' 사업신청 필수
  - 사업내용
    - 제품 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인력을 통한 판촉, 홍보 지원
    -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형식으로 운영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기회 제공
  - 신청방법
    - 발굴연계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 유통마케팅지원사업 → 해당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제반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 문의 :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4

### 9) 정책매장(대형유통)

- ▶ 상권이 우수한 공공, 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판매 촉진
  - 신청 자격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 해당 판매장 사업 신청시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4층 아임쇼핑)' 사업신청 필수
  - 사업내용
    - 제품 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인력을 통한 판촉, 홍보 지원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형식으로 운영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기회 제공
  - 문의 :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3

### 10) 정책매장(교통시설)

- ▶ 상권이 우수한 공공, 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판매 촉진
  - 신청 자격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 해당 판매장 사업 신청시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4층 아임쇼핑)' 사업신청 필수
  - 지원제의 품목
    - 전매장 공통 : 수입제품, 1차 식품 및 주변매장 유사상품 등 제외
    - KTX 부산 : 식품 제외
    - 화성휴게소 : 식품 및 자동차용품 제외
  - 사업내용
    - 제품 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인력을 통한 판촉, 홍보 지원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형식으로 운영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기회 제공
  - 문의 :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3

### 11) 행복한백화점(1~3층)

- ▶ 신제품, 아이디어상품, 벤처창업 등 판로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판매장 제공 및 인큐베이팅
  - 신청 자격
    -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한 고객선호 우수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 지원절차
    - 입점상담 > 상담 > 입점승인 위원회 > 입점 확정

## 12) 온라인쇼핑몰기획전

- ▶ 혁신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판매기획전 운영
  - 지원내용
    - PC/모바일 기획전 운영(중기제품 전용배너관 구축, 연간30회 이상)
    - 매체별 특성에 따른 추가 프로모션 지원(쿠폰 등)
  - 지원대상
    - (인터넷최저가 기준) 기획전 기간 내 판매가를 유동적으로 조정가능한 상품
    - 온라인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및 QC서류가 구비된 업체
  - 문의
    - 온라인사업단 온라인전략팀 ☎ 02-6678-9812

## 13) 오프라인 기획전

- ▶ 우수 중기제품을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획전에 판매 연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신청자격
    -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
    - 대형 유통사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판매사원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오프라인 기획전 총 15회
    - 지원내용 : 대형유통업체 내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판매 기회 제공

## 14) 동반성장 복지물

-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복지물 입점을 지원해드립니다.
  - \* 복지물 : 기업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개설하는 전용 쇼핑몰
  - 사업내용
    -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임직원물 입점 지원
    - 온라인 신규 판로지원 기능 수행
    -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테스트 시장 역할
  - 사업현황
    - 현대자동차 동반성장물 :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상 동반성장물 오픈 준비 중
    - LG그룹 복지물 : LG그룹 임직원 대상 '임직원물 입점' 운영 중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등 제휴서비스 고객 대상 '최저가물' 운영 중
  - 문의 : 온라인사업단 온라인운영팀 ☎ 02-6678-9821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8층  
[www.coop.go.kr](http://www.coop.go.kr)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761